

ISSN 2465-9207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제9권
제1호
2023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 제1호 ■ 2023

■ 기획논문 미디어 윤리와 인격권

1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 동향 분석

- 해외 주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상윤모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박소영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연구교수)

■ 연구논문

39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결정에 대한 검토를 경하여 -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법학박사)

85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개념 분석과 국내·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부록

132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144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151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 Contents

- 1 **Trends in Ethics-related Research in Journalism, Media, and Communication Studies**
- Focusing on Major Overseas Journals -
Sang, Yoonmo
Sungshin Women's University
Park, Soyoung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 39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the Reporting of Identifying Information of Child Abusers**
Shin, Sang-Hyun
Dr. jur., Research Fellow,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85 **Journalism Ethics and Conflict of Interest**
- A Conceptual Analysis and a Review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des of Ethics -
Kim, Minjeong
Ph.D., Professor, Divis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 동향 분석

- 해외 주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상 윤 모**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박 소 영***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연구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3년 이후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학술지에 실린 윤리 관련 연구 경향과 특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Web of Science와 Scopus에 등재된 저널 중 검색기준에 따라 상위 20개 저널을 선정하여 추출된 782편의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3년에는 33건에 머무른 윤리 관련 연구가 2022년에는 143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양적 성장은 연구 주제의 확장과도 연결되었다. 본 연구는 저널리즘 윤리, 커뮤니케이션 윤리, 광고·PR 윤리, 인터넷 윤리, 미래 기술 관련 윤리, 대중문화와 전통 미디어 관련 윤리, 윤리 교육 등 저널리즘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의 세부 영역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를 다룬 연구들 외에도 윤리적 혼돈(moral panic), 사회운동, 윤리 이론과 철학, 연구 윤리 등 윤리학적 논의나 사회 현상이 새로운 연구 흐름을 형성하는 등 점차 다양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윤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

*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7S1A6A3A01078538)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ymsang@sungshin.ac.kr

*** 교신저자: soyoungpark@cau.ac.kr

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윤리 연구 경향을 총 15개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신기술이 윤리 연구에 가져온 기회와 도전 뿐 아니라 연구에서 축적된 윤리적 자산을 미디어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윤리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론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분석된 윤리 관련 연구의 72%가량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적 연구 방법의 흐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며 질적 접근법이 윤리 연구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양적 연구 방법은 20%, 양적·질적 접근 방식이 모두 활용된 혼합 접근 방법은 8%를 차지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언론 윤리, 미디어 윤리, 내용분석, 연구 동향

목 차

- I. 서론
- II. 문헌 연구
 - 1. 언론 윤리·미디어 윤리 관련 기존 연구
 - 2. 윤리에 관한 연구의 동향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1.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지속적인 성장
 - 2.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주요 화두
 - 3.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
- V. 결론 및 논의

I. 서론

윤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Schrier, 2019). 윤리란 “개인 및 사회적 도덕 경험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해야만 하는 규칙들, 추구할만한 가치들, 그리고 삶에서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성격 특성들을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라고 정의되기도 한다(De George, 2010, p. 13; Bowen, 2016 재인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윤리란 어느 개인에게나 적용되고 명백하게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규율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도덕률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다른 입장에서는 윤리가 사회적 조건의 산물임을 강조하기도 한다(LaFollette, 1991). 이희은(2018)은 미디어 윤리를 이미 확정된 행동의 원칙들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도덕률이 아닌 “아직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논쟁적인 영역”일 수 있으며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선택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123쪽). 한편 존스(Jones, 2021)는 미디어

윤리에 대한 논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개별 기자들과 같은 실무자들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언론의 사회적, 제도적 맥락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미디어 윤리는 저널리즘, 광고 및 홍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미디어 영역에서의 윤리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 분야에서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연어처리와 트랜스포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등장으로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올 변화들에 주목하면서 윤리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로봇 윤리와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의 증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박아란, 2022; 하유선·이연희·심지원, 2021; Lin, Abney, & Jenkins, 2017).

법과 윤리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과 장소가 변함에 따라 법과 윤리의 경계 또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법제와 언론 윤리는 종종 함께 언급되곤 한다. 국내에서 언론 법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언론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승선, 2005, 2014; 이승선·이재진, 2011; 이재진·이승선, 2008; 이재진·박성순, 2015). 이승선(2005)의 연구는 언론법 영역을 ‘기본법 영역’, ‘응용 영역’, ‘정책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고 한국 언론법 연구 경향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편, 영문으로 작성된 한국 언론 법제 관련 저술 및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한국 언론법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준 연구도 수행되었다(Youm, Sang, & Park, 2018).

이에 반해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의 국내 및 해외 연구 경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 법제를 필수과목으로 두고 언론 윤리도 비교적 비중 있게 교육하고 있는 미국대학들과 달리 국내 대학들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에서는 언론 법제가 필수과목이 아닌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의 경우 언론 법제 전공 전임교수를 보유한 대학들도 소수에 불과하다.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의 경우 독

립적인 교과목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언론 법제나 미디어 법제 수업에서 일부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언론 윤리 또는 미디어 윤리 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에서 충실히 다루어져 왔다고 보기 힘들다.

반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다른 분야들에서는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국내 연구를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 중독 연구의 경향 분석(김수아·김세은, 2012), 사이버불링 연구 경향 분석(한희정·정혜진, 2014), 국내 광고홍보학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김수연·김대욱·최명일, 2013), 허위정보 연구 경향 분석(김희섭·강보라, 2019),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의 동향 분석(김영환·김우경·박지숙, 2021), 미디어 폭력에 대한 국내 연구 경향 분석(이상기·이정민, 2015)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재미 한인 언론학자들의 모임인 Korean American Communication Association(KACA)는 지난 2018년 4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들에서 그동안 출간된 영문 저술 및 논문 등을 소개하면서 관련 분야들의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조명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Jin & Kwak, 2018).

하지만 국내 연구 중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윤리’라는 주제가 어떻게 연구되어왔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움과 동시에 오늘날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윤리 연구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상기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디어 윤리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학술지로 평가되는 <Journal of Media Ethics: Exploring Questions of Media Morality>¹⁾의 경우 1985년부터 현재까지 수백 편의 미디어 윤리 관련 논문을 출간하

1) 이 저널의 경우 1985년부터 2014년까지는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Exploring Questions of Media Morality>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2015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였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상위 20개 저널의 경우 지난 10년간 적어도 20편 이상의 윤리 관련 연구를 출간하였다. 국내에서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국내 주요 저널들에서 윤리를 연구의 주제로 다룬 논문의 수도 해외 주요 저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이후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학술지에 실린 윤리 관련 연구 경향과 특성을 탐색해보고 국내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문헌 연구

1. 언론 윤리·미디어 윤리 관련 기존 연구

언론 윤리 연구의 경우 전통적으로 뉴스 보도에서의 사실성 및 공정성과 같은 이슈들이 주로 논의되었다(Kovach & Rosenstiel, 2007). 한편 저널리즘의 기본가치들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만일 변형된 형태의 가치들이 요구된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본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었다(Eberwein & Porlezza, 2016). 싱어(Singer, 2010)는 저널리즘 산업을 둘러싼 경제적 압력들과 기술적 변화들이 전통적인 저널리즘 관행과 윤리적 기준들 및 언론사들의 사업 모델 또한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저널리즘의 윤리적 기준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층 보도와 탐사 저널리즘과 같은 양질의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 저널리즘 관련 전문 협회들의 역할 및 윤리적 기준들의 강화, 언론사 수입원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이 요구

된다(Singer, 2010).

저널리즘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이슈 중의 하나로 가짜뉴스를 들 수 있다. 가짜뉴스 현상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현상이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학문적 논의들이 쌓여왔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정책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가짜뉴스 이슈를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측면에서 다룬 연구도 존재한다(Patching & Hirst, 2021; Stroud, 2019).

스트라우드(Stroud, 2019)는 실용주의적 미디어 윤리 접근 방식이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복잡한 규범적 문제들을 균형감 있게 이해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짜뉴스 현상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절대적으로 옳은 해결책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윤리적 결정은 대립하는 가치들과 결과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짜뉴스 현상을 다루는 데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팩트체크 시도들, 정부의 관여와 같은 다양한 해결책들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각각의 접근이 가진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디지털화는 저널리즘 관행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매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Eberwein & Porlezza, 2016).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 및 ‘섹스토션(sextortion)’을 포함한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image-based sexual abuse)’의 확산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도 야기했다(McGlynn, Rackley, & Houghton, 2017).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와 같은 이슈의 등장은 모럴 패닉(moral panic)을 초래하고 사회적 논쟁과 긴장을 수반한다. 제프리(Jeffery, 2018)는 어린이의 성애화(sexualization)와 섹스팅(sexting)에 대

한 호주 언론의 담론을 분석한 연구에서 오늘날 모바일 기술과 관련된 패닉은 어린이,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다른 권위 있는 존재들 사이의 권력관계 변화들에 대한 집합적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디지털 불법복제 이슈(Lindgren, 2013)나 혐오 표현과 같은 주제들도 윤리적 도전 또는 모델 패닉 관점에서 접근되어왔다(Baker, 2001).

한편, 남재일(2010)은 국내 언론 윤리 연구의 상당수는 언론인 설문조사, 언론사의 윤리강령 비교분석 등을 통해 언론의 윤리 수준을 평가하고 언론 윤리의 실천적인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임을 지적한 바 있다. 김재영·양선희(2007)의 연구는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윤리강령 및 보도행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과 미국 신문사 간의 윤리적 실천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조소영(2022)의 연구는 국내 16개 언론사의 윤리강령 현황을 분석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 언론사마다 윤리강령에 대한 명칭, 구체적 규정 제정 여부, 심사를 담당할 기구의 존재 여부가 상이하하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세한 차이들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들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발견됨을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는 윤리강령의 운영 측면에서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교육, 실제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 규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언론윤리강령 실행지침의 명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언론 윤리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이재진(2005)의 연구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언론 윤리를 취재 및 보도 과정의 구체적 행위들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반면 사법부의 경우 언론의 기능이나 역할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과 연결해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연구는 서로 다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윤리에 대해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갖는 함의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윤리에 관한 연구의 동향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윤리 연구는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발달해왔다(Eberwein & Porlezza, 2016). 전통적인 신문 및 방송 영역에서의 윤리적 이슈들에서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과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야기된 윤리적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달은 그에 뒤따르는 윤리적 논란들을 초래해왔다. 최근에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관련 윤리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Jobin, Ienca & Vayena, 2019; Mittelstadt, Allo, Taddeo, Wachter & Floridi, 2016),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포함하여 윤리 교육, 법학, 철학, 공학 및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윤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연구 윤리 주제 또한 연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다(Fiesler & Proferes, 2018; Markham, 2018).

로버트슨(Robertson, 2008)은 1996년에서 2005년까지 10년 동안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에 게재된 658편의 논문을 기업 윤리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로버트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윤리 연구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연구의 초점은 제한적이며, 가장 두드러졌던 주제는 환경주의(environmentalism)로 검토한 저널 전체 연구논문의 30%가량을 차지하였다(Robertson, 2008). 광고 영역에서도 윤리라는 주제는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으며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Zinkhan, 1994).

윤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 중에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외 특정 분야에서 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연구 윤리’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다(Lee, 2021). 해당 연구에 따르면 연구 윤리에 관해 다룬 논문들의 경우 인문·사회 및 교육학 분야 저널

에 실리는 비중이 높았으며, 연구 방법의 경우 문헌 및 이론적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Lee, 2021). 최지혜(2008)의 연구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 저널인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에 실린 487편 논문의 초록을 대상으로 과학 윤리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과학 윤리 관련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해당 연구에서 최지혜(2008)는 과학 윤리 관련 지침이나 규범, 정책 및 법률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과학 윤리 교육에 관한 커리큘럼 개발 등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상담윤리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오송희·이정아·김은하, 2016), 스포츠윤리 연구 동향(함정혜·최진선, 2017), 간호윤리 연구 동향(김신미·이인숙·김세영·노운구·박보현, 2017) 등 특정 분야에서의 윤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시대와 장소가 변함에 따라 중요시되는 이슈는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이슈들을 윤리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때 각 이슈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 정도 및 중요도 또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슈들이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 사회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의 경우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윤리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해외 주요 저널들에서 윤리에 관한 연구는 어떤 경향성을 띠고 진행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해당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서 다루어진 윤리 관련 연구의 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해당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서 다루어진 윤리 관련 연구의 경우 어떠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의 윤

리 연구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상기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지난 10년(2013 - 2022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 실린 논문들을 기준으로 볼 때, 윤리 연구의 경향은 어떻게 변했는가?

연구 문제 2: 지난 10년(2013 - 2022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 실린 윤리 관련 논문들은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었는가?

연구 문제 3: 지난 10년(2013 - 2022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 실린 윤리 관련 논문들은 어떤 연구 방법을 주로 이용했는가?

Ⅲ. 연구 방법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된 연구논문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 최대의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와 Web of Science (WoS)를 활용하여 여기에 등록된 467개의 커뮤니케이션 분야(category) 저널 중 상위 200개 저널을 특정했다. 해당 저널들에서 ‘ethics’ 또는 ‘moral’이라는 키워드가 논문 제목 혹은 초록에 포함된 저널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저널들을 대상으로 본 논문의 분석 기간인 지난 10년(2013-2022) 동안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연구논문을 많이 게재한 순서로 상위 20개의 저널을 선정하여 여기서 추출된 연구논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아래 <표 1> 참조).²⁾

²⁾ 상위 200개 저널 중 <Journal of Empirical Research on Human Research Ethics>의 경우 WoS 및 Scopus 모두에 등재되었으며, ‘ethics’ 혹은 ‘moral’이라는 키워드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관련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널에 소개된 북리뷰, 코멘터리, 혹은 저널 특별 호의 소개논문 등은 제외하고 연구논문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집된 논문의 수는 782편이다. 한편,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시기를 2013년부터 2022년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2010년대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가 급증하였으며,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최근 10년의 분석 기간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윤리 이슈의 확대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집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2인의 연구자가 연구의 제목과 초록, 본문을 검토하여 귀납적(inductive) 관점에서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주된 분석 항목은 분석 대상이 된 연구가 속하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세부 영역, 연구의 핵심 주제,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윤리적 이슈의 내용, 그리고 사용된 방법론이 포함되었다. 연구의 주요한 윤리적 화두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 유목은 우선 2인의 연구자가 각각 백여 편의 연구를 사전 검토한 후 각 연구의 주제가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세부 분야 중 어떤 영역에서의 윤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는지 고려해 설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중심 화두가 보다 근원적인 ‘윤리학’ 영역의 문제와 가깝거나 특정 윤리적 의제나 현상이 두드러지는 하나의 연구 흐름을 형성할 정도로 빈번히 등장하는 경우 논의를 통해 이를 별도의 유목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내용분석이 질적, 귀납적 성격을 띠기에 분석의 일관성 검증은 위한 코더 간 신뢰도

를 중심으로 검색 시 가장 많은 논문이 검색되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미디어’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의 성격이 매우 강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저널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색 기준에 따라 가장 많은 논문을 출간한 저널은 <Journal of Media Ethics>였다. Scopus에만 등재된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를 제외하고,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나머지 19개 저널 모두 WoS와 Scopus에 동시에 등재되어 있다.

계수 추출과 같은 계량적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연구자들의 의견이 나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사용된 방법론 차원에서는, 각각의 연구가 양적(quantitative), 질적(qualitative), 또는 양·질적 접근법이 혼합된 혼합적(mixed) 접근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거나 혁신적인 연구 방법이 사용된 경우 별도로 기록해 논하고자 했다.

〈표 1〉 저널리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 저널별 ‘윤리’ 관련 연구, 2013-2022년 기준³⁾

저널명	논문 수
Journal of Media Ethics: Exploring Questions of Media morality	110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57
Journa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thics in Society	52
Public Relations Review	52
Journalism	51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41
Journalism Studies	38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38
New Media & Society	36
Journalism Practice	36
Media, Culture & Society	32
Feminist Media Studies	32
Poetics	32
Social Media + Society	29
Discourse & Society	27
Big Data & Society	25
Discourse, Context & Media	24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24
Games and Culture	23
Digital Journalism	23
계	782

3) 2022년 기준 온라인에 먼저 출간된 논문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일부 논문의 경우 이후 해당 학술지의 권호가 배정되어 본 논문의 작성 시점에는 2023년 논문으로 분류된 예도 있음을 밝힌다.

IV. 연구 결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782편의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윤리 연구를 분석한 결과, 광의의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넷 윤리, 저널리즘 윤리, 광고·PR 윤리 등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세부 영역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와 더불어 윤리 이론과 철학, 사회 운동, 윤리적 혼동 등 윤리적 논쟁이나 현상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특징적인 연구 흐름을 별도로 고려하여 총 15개의 주제 영역이 도출되었다. 아래의 <표 2>는 각 주제 영역에 대한 설명과 영역별 논문 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를 토대로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들에 답하고자 한다.

<표 2>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대표적 주제 영역

주제 영역	설명	논문 수
저널리즘 윤리	건강한 사회적 공론장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언론과 미디어의 책무 및 원칙에 관한 연구, 기사 작성 및 보도 관행 등과 관련된 연구 등	178
커뮤니케이션 윤리	건강 커뮤니케이션,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 커뮤니케이션, 수사학 등 커뮤니케이션 각론 영역에서 논의되는 윤리적 문제를 논한 연구/ 대인 간 혹은 그룹 간 커뮤니케이션 갈등과 관련된 이슈 포함	74
광고·PR 윤리	광고·PR 수행 시 준수되어야 할 윤리 원칙과 가이드라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관련 이슈들이 포함된 연구	71
미래 기술 영역의 윤리적 이슈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데이터, 로봇, 스마트 컴퓨팅, 실감 미디어 등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기술 영역에서 불가피한 윤리적 이슈 및 윤리 원칙 정립을 다룬 연구	61
디지털 미디어·인터넷 윤리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광의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규범에 대한 연구	47
대중문화 영역 윤리	영화, TV, 라디오, 도서, 잡지, 음악, 팬 문화, 스포츠 등 대중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윤리 관련 담론과 이슈를 논의한 연구	43

주제 영역	설명	논문 수
윤리 교육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	42
윤리적 혼돈	이른바 모럴 패닉(moral panic)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윤리적 혼돈 현상을 야기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 범죄 등 사회 문제를 다룬 연구	38
윤리 이론과 철학	윤리 규범과 담론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이론적 체계와 철학적 사유를 담은 연구	36
플랫폼	소셜 미디어를 위시한 플랫폼 영역에서의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연구	34
직업윤리	저널리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규율하는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다룬 연구	24
게임 윤리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에 관한 연구	24
사회운동	온라인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집합적 운동을 통해 제기되거나 해결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관해 논의한 연구	24
연구 윤리	연구 수행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규범에 관한 연구	24
기타	위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들	62

1.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지속적인 성장

아래 <그림 1>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본 논문이 선정한 해외 주요 학술지들에 실린 윤리 관련 논문의 게재량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13년에는 33건에 머무른 윤리 관련 연구가 2019년에는 백여 건에 가까워졌고, 3년 후인 2022년에는 약 1.5배 성장한 143건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연구의 수가 근소하게 줄어든 2015년을 제외하고,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윤리 연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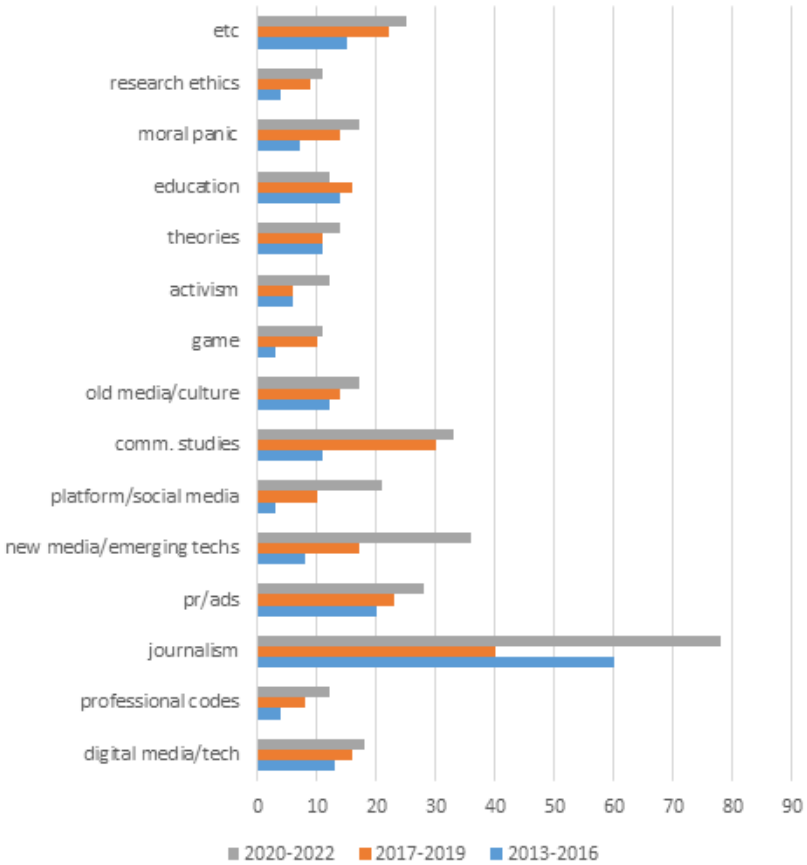


〈그림 1〉 윤리 관련 논문의 게재량 변화 추이, 2013-2022 (10년)

이와 같은 연구의 양적 성장은 연구 주제 및 연구 범위의 확장과도 연결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주제 영역에서 2010년대 초·중반에 비해 2010년대 중후반을 거쳐 2020년대에 접어들며 윤리 연구가 더욱 활발히 발표되었다.

2010년대에는 저널리즘과 PR 및 광고, 그리고 미디어 교육 등 전통적인 윤리 연구 분야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활발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소수집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과 같은 ‘모럴 패닉(moral panic)’ 등 윤리적 혼돈 현상과 온라인 게임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둘러싼 윤리적 이슈를 다룬 연구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 외에도 정치·환경·건강·수사학·대인·집단 커뮤니케이션 등 커뮤니케이션학 각론에 해당하는 여러 세부적인 영역에서 포퓰리즘, 기후변화와 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화두를 중심으로 윤리 연구가 수행되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포함하는 2020년대 초반의 가장 두드러지는 연구 경향은 인공지능, 기계학습, 빅데이터, 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 컴퓨팅 기술 등,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미래 기술들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규명하고 이에 효과적으



<그림 2> 주제 영역별 윤리 관련 논문의 게재량 변화

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코비드(Covid) 19 팬데믹 국면에서 가속화된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급격히 빨라지는 기술의 진보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와 부작용을 낳으며 사회적 논쟁을 야기했지만 이와 동시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들을 촉진하는 촉매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영역에서 플랫폼과 이용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와 더불어 연결된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참여를 통해 확대되는 사회 운동의 의의와 윤리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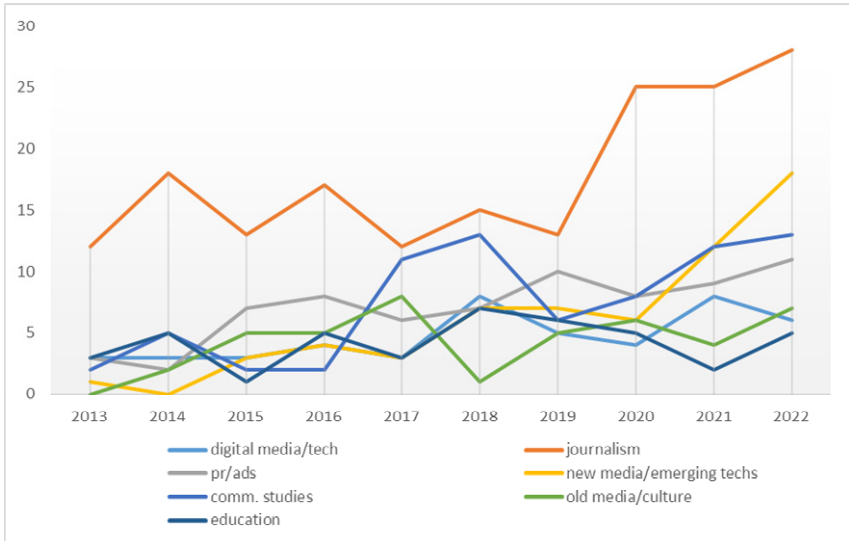
전통적 윤리 연구 지형의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명실공히 윤리 연구의 대표적인 주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널리즘 윤리 영역의 연구는 2010년대 후반 상당히 줄어들다 2020년대 다시 증가하며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또 다른 전통적인 대표 주제 영역인 PR과 광고 영역의 윤리 연구는 근소한 증가세로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무르는 한편 윤리 교육 영역의 연구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해외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윤리 관련 연구가 점차 환영받는 경향을 띠고 있음이 관찰된다. 특히 <Journalism>, <Journalism Practice>와 같은 대표적인 저널리즘 학술지에서 2010년대 초반(각각 13건, 6건)보다 2020년대(각각 29건, 20건)에 눈에 띄는 윤리 연구의 약진을 보여주었다. 한편, <Journa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 Ethics in Society>, <Feminist Media Studies>, <Big data & Society> 등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학술지에서도 2020년대 들어 윤리 관련 논문 게재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각 20편→ 32편, 7편→ 20편, 7편→ 18편).

2.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주요 화두

저널리즘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해외 주요 학술지 중 윤리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실린 상위 20개 학술지에서 다뤄진 윤리 관련 연구들의 주요한 주제는 총 일곱 가지를 꼽을 수 있다(그림 3). 저널리즘 윤리, 커뮤니케이션 윤리, 광고·PR 윤리, 미래 기술 관련 윤리, 넓은 의미의 디지털 미디어 및 인터넷 윤리,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윤리, 그리고 미디어 교육에서의 윤리에 관한 화두들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요

주제별 연구 경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고, 각 주제 영역의 윤리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주제와 기타 구체적인 특징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3〉 상위 7개 주제 영역에서의 윤리 관련 연구 증감 추이 (2013-2022)

지난 10년간 각 주제 영역에서 윤리 관련 논문들의 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3). 우선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다루어진 윤리 관련 연구 주제는 저널리즘 윤리이다. 비록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저널리즘 윤리 연구가 다소 주춤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보다도 더 많은 수의 연구가 발표되며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대표적 화두로서 그 위치를 굳건히 해 오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전한 공론장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대한 논의(Mohamed, 2020)에서부터 기사 작성 및 보도와 관련된 실천적 논의(Morse, 2014; Zou, 2018), 기자들과 정보원 간의 관계(Wright,

2016), 데이터 저널리즘과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윤리적 이슈들(Dörr & Hollnbuchner, 2017; Lewis & Westlund, 201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저널리즘 윤리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전과 뉴스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저널리즘의 조류 및 이와 관련된 윤리적 규범과 관련된 논의 또한 상대적으로 빈번히 등장하는 연구 주제였다. 사진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저널리즘(photojournalism, visual solution journalism, e.g., Hunt & Jalette, 2021), 창의적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보도에 중점에 두는 리터러리(literary) 또는 내러티브(narrative) 저널리즘(e.g., Greenberg, 2014), 국외의 사건이나 재난 등 특수한 맥락을 가진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느린(slow)’ 저널리즘(e.g., Boyles, 2016)의 적용 등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며 저널리즘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저널리즘 기법들이다. 나아가, 정보 생산 과정에서 생산자와 이용자 간 벽이 허물어지며 기성 저널리스트와 다른 궤적을 거쳐 온 일반 시민이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이 뉴스 생산의 한 축을 이루게 된 상황을 주목하며 새로운 저널리즘과 전통적 저널리즘의 관계, 새로운 저널리즘 영역과 행위자들에 적용되어야 할 저널리즘의 가치와 원칙도 주요한 연구의 화두로 제시되었다(e.g., Mathisen, 2019; Salaudeen, 2022).

저널리즘 윤리 다음으로 윤리 관련 연구가 많이 이뤄진 영역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의 윤리 연구이다. 2010년대 초중반 비교적 적은 수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커뮤니케이션 세부 분야에서 윤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윤리 문제가 다루지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학의 세부 분야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헬스커뮤니케이션, 환경커뮤니케이션, 수사학 등으로 이들 세부 분야들의 연구는 정치와 사회, 자연환경과 건강 등 인간사회의 여러 국면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 주제는 양극화, 포퓰리즘, 민주사회의 정치과정 변동에 관여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현상을 이르는 정치의 미디어화(mediatization of politics)

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이에 대한 윤리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밈(meme)과 같은 독특한 표현 양식을 통한 참여적 정치 문화, 윤리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소개 및 분석하는 논문들이 있었다(e.g., Hamo, Kampf, & Weiss-Yaniv, 2019; Kissas, 2022; Paz, Mayagoitia-Soria, & González-Aguilar, 2021). 건강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시민 의식이 성장하며 보편적 기본권을 넘어 정신 건강이나 웰빙 등 개인적 차원의 복리 신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등장했고(e.g., Gravel -Patry, 2022), 환경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나 동물권 등 주변 환경으로의 관심의 확장 및 이들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의 가치가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e.g., Huges, 2021; Weder & Voci, 2021). 한편, 저널의 성격에 따라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명확한 경우도 존재한다.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저널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논문 대다수가 대인 간 혹은 그룹 간 갈등 양상과 그와 연관된 윤리적 고민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다루고 있었다.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대표적인 다른 축은 광고·PR 윤리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촉진이나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 PR캠페인, 마케팅, 광고 등의 일련의 실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이슈와 갈등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에 더하여 그 실행 시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원칙과 관행 및 구체적인 실천 강령 등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다. 광고·PR 윤리 분야는 큰 기복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분야 연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었던 협찬 콘텐츠(sponsored content) 이슈에 대한 윤리적 고찰(Wellman, Stoldt, Tully, & Ekdale, 2020)을 비롯하여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윤리적 관행에 관한 PR 전문가들의 인식 차이를 국가 간 비교한 연구(Toledano & Avidar, 2016),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 기업들의 CSR 관련 활동의 제한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Kirat, 2015)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소셜 미디어가 광고 홍보 캠페인의

효과적인 도구가 되면서 소셜 미디어상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에 대한 윤리적 접근과 캠페인에의 활용이 화두로 다루어지기도 했다(Borchers & Enke, 2022).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불거지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 또한 증가하였다. 일례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광고 홍보 전략의 하나로 부상한 이용자 행위 기반의 마이크로타겟팅(behavioral micro-targeting) 기법에 대해, 해당 전략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를 조명함과 동시에 이를 보다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안 또한 연구되고 있다(Choi, 2022).

한편, 새롭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윤리 연구 영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메타버스 등을 위시한 실감미디어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것으로 여겨지는 미래 기술 관련 영역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해당 영역에 관한 연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활용 영역이 확대되며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적용 가능한 규범 수립을 촉구하는 연구들은 특히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된 디지털 전환기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 범위의 확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연구는 AI와 빅데이터 윤리 원칙과 규범을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정리하는 이론적 연구부터, 알고리즘 관련 정책 수립이나 거버넌스, 기술의 윤리적 설계(ethical design)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고민하는 연구들로 이어진다. 한편, 봇(bot)이나 음성 기반 AI비서, AI 활용 범죄 예측 등 특정 기술의 사례연구를 통해 프라이버시나 감시(surveillance)의 문제뿐 아니라 책임(responsibility)과 공정성(fairness), 신뢰(trust) 원칙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e.g., Franzke, 2022; Kieslich, Keller, & Starke, 2022).

위와 같은 소위 미래 기술의 발전과 그에 뒤따르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윤리적 논의 외에도,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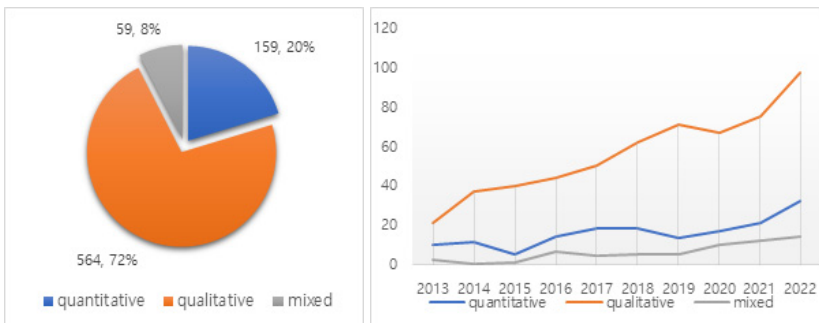
기술 영역 전반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들을 다루는 연구들도 꾸준히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2010년대 전반보다 후반부터 해당 영역의 윤리적 문제를 고민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반부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폭넓은 고민이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다룬 연구가 눈에 띈다(Slavitcheva-Petkova, Nash, & Bulger, 2015).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컴퓨팅 환경이나 기술정보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인권이 맞닥뜨린 새로운 변화와 도전,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 및 불평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e.g., Collier, 2021; Powell, Ustek-Spilda, Lehuédé, & Shklovski, 2022). 본 연구에서는 비록 별도의 주제 영역으로 분리되었지만, 2020년에 접어들며 급속히 증가한 플랫폼 및 온라인 사회 운동 영역의 연구 또한 광의의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경제, 노동 관련 사안들에서 파생되는 윤리적 이슈에 관한 내용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영화나 TV 프로그램, 음악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관찰되는 윤리 연구와 미디어 교육 영역에서 포착되는 윤리 이슈들 또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전자는 대중문화 콘텐츠 속 캐릭터나 스토리에 투영된 윤리적 가치나 사회적 교훈에 대해 논하는 경향이 많다. 반면, 후자는 미디어 윤리를 미디어 교육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해외 저널 중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의 경우 선정된 논문 대다수가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교육과 관련된 실천적 논의를 다루고 있었다.

3.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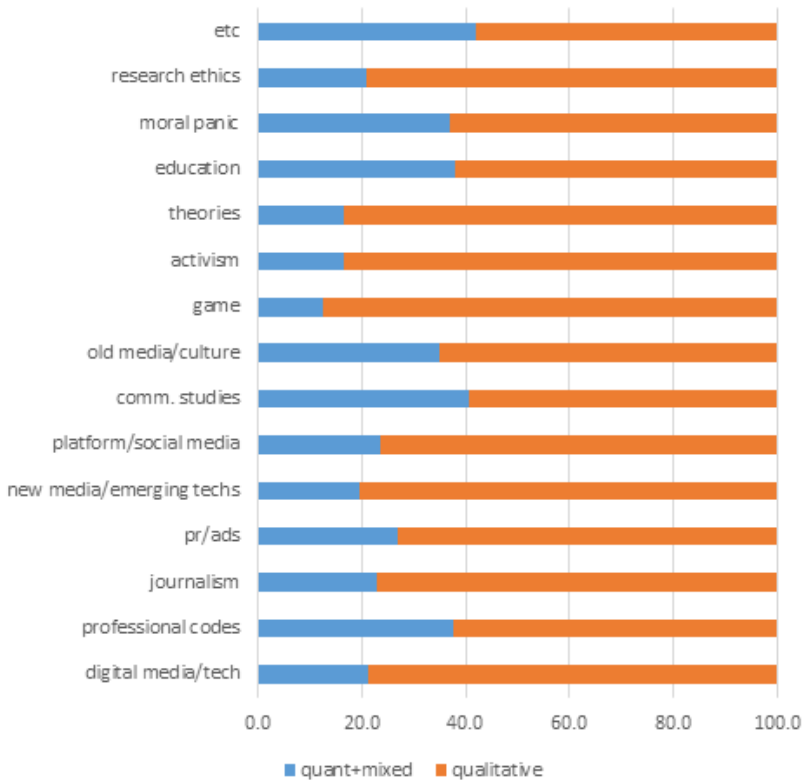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해외 주요 학술지에 실린 윤리 관련 논문들이 사용한 연구 방법을 살펴본 결과, 질적, 심층적 연구 방법이 약 70% 이상을 차지

하는 주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양적 접근 방법은 20%, 양적, 질적 접근 방식이 혼합된 혼합 접근 방법은 8% 정도를 차지하며 윤리 연구는 약 7:3의 비율로 질적 접근 방식이 주류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그림 4). 시간의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질적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선호와 신뢰는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빅데이터의 시대, 방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가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윤리 연구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의 활용이 꾸준히 선호되고, 오히려 매년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양적 접근 방법과 혼합 연구 방법의 활용도 최소한 매년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선호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하게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본 연구는 컴퓨테이셔널(computational) 기법과 네트워크 분석 기법(network analysis techniques) 등 특히 사회과학 연구의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새롭게 대두됐던 방법론들 또한 양적 접근 방식으로 간주하고 코딩했는데(이와 같은 방식이 질적 연구 방식과 혼합된 경우는 혼합 접근법으로 코딩), 이러한 방법론이 활용된 논문은 총 14편에 불과했다.



<그림 4(좌), 5(우)> 지난 10년간 윤리 관련 논문들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 및 활용 변화 흐름

한편, 각 주제 영역별로 양적, 질적 연구 방법들이 지난 10년에 거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비율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전술했듯, 모든 주제 영역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의 활용이 두드러지나, 커뮤니케이션학 세부 분야에서의 윤리 연구(40.5%), 윤리 교육 분야(38.1%), 직업윤리(37.5%), 윤리적 혼돈(36.8%)에 관한 연구에서 다른 분야보다 높은 양적 접근 방식의 활용이 관찰되었다. 한편, 온라인 게임(87.5%), 사회 운동(87.5%), 윤리 이론(83.3%), 미래 기술 관련 윤리 연구(80.3%)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질적 접근 방식이 더 높은 비율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주제 영역별 윤리 관련 논문들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 비교(%)

이처럼, 일반적으로 질적 접근법에 기반하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윤리 연구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Case Study),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포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참여관찰 등을 포함하는 민속지학(ethnography), 그리고 질적 내용분석(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 문헌 연구(Archival Research))을 꼽을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의 확장과 보폭을 함께 하는 질적 연구의 진전도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공간의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 영역의 민속지학적 연구 방법은 디지털 민속지학(Digital Ethnography)이나 넷노그래피(Netnography, see Bowler Jr, 2010)라는 명칭으로 최근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들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 특정한 기술적 환경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관찰하여 그 수용과 이용 행동을 분석하는 ‘워크스루 기법(walkthrough method, see Light, Burgess, & Duguay, 2018)’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 방법이다. 한편, 가장 빈번히 활용된 양적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 양적 내용분석, 그리고 실험연구 방식을 꼽을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해외 주요 학술지들에 발표된 윤리 관련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윤리 연구의 주요한 주제와 이슈 및 연구 방법 등에 초점을 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국제적인 윤리 연구 동향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윤리 연구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 및 연구 범

위의 확장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20개 저널을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33건에 머무른 윤리 연구의 수는 2022년 143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통적 윤리 연구의 영역인 저널리즘 윤리와 커뮤니케이션 윤리, 광고·PR 윤리, 대중문화와 전통적 미디어 관련 윤리 외에도 인터넷 윤리, 미래 기술 관련 윤리, 플랫폼 윤리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사회 변화로 인해 점차 넓은 범위에서 윤리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연구 주제의 경우 눈에 띄게 확장됐지만, 대다수의 윤리 연구가 여전히 전통적인 질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록 디지털 민속지학과 넷노그래피, 워크스루 기법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활한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인터뷰와 민속지학, 사례연구, 질적 내용분석 등 고전적인 질적 연구 방법이 선호되고 있었다. 양적 접근법이나 혼합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는 시간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사회과학 영역 전반에서 혁신적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연구 방법 등은 윤리 관련 연구에서는 그 적용이 예외적인 편에 속했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윤리 연구의 동향에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제적 압력들과 기술적 변화들이 레거시 미디어 저널리즘 등 전통적 미디어 영역에 가져오는 위기와 위협이 윤리 연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신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와 혼란은 전통적인 윤리 연구의 영역이었던 저널리즘과 광고·홍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를 촉발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기존의 영역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편입해야 할지, 가짜 뉴스 현상, 네이티브 광고 등을 둘러싼 윤리적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야 할지, 시민기자와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레거시 영역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레거시 미디어가 전하는 본연의 가치와 원칙을 어떻게 보전하거나 개선할 것인지 등, 새롭게 떠오르는 윤리적 질문들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기술 혁신이 향후 윤리 연구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다.

둘째, 윤리 연구는 신기술을 윤리의 영역으로 포섭하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를 확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등 현재 차세대 산업 혁명의 핵심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범위를 고려할 때 기술의 개발과 도입, 활용 과정에서 사회 공동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학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 자체를 넘어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저널리즘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윤리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활용, 기술로 인한 결과 전반에서 대립하는 가치와 규범을 조율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가치와 규범을 조정하는 방식에도 연구 관심을 두으로써 효과적으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학의 접점을 마련하는 교두보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윤리 연구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이론적 틀은 물론이고 이를 어떻게 미디어 교육 과정의 일부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방향을 확립해야 할지는 향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된 윤리 연구들은 인공지능 윤리, 데이터 윤리, 저널리즘 윤리, PR 윤리, 광고 윤리 등 각각의 영역에서 수많은 윤리 규범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하나의 체계 안에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이론적 고민은 아직 찾기 어렵다. 이처럼 다양한 윤리적 화두들을 교육 과정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희소한 실정이다. 비록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등 미디어 교육 연구를 다루는 논문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널이 있으나, 해외의 연구 사례를 통해 살필 때도 미디어 교육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연구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한계는 저널리즘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의 장기

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전술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서 윤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 국내의 경우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는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해외의 사례처럼 미디어 윤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국내 저널들에서 윤리 관련 연구가 더욱 많이 소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구와 교육은 분리하여 다루어지기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 보완적일 때 각 영역에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언론 윤리 또는 미디어 윤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 외에도 대학 및 언론 현장에서의 언론·미디어 윤리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교육은 그동안 국내 대학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김춘옥, 2008).⁴⁾ 국내의 경우 언론인들에 대한 체계적 윤리 교육 시스템이 부재하며 재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강아영, 2017; 김춘옥, 2008; 이소연, 2022).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는 요즘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에 대해서도 대학에서의 커리큘럼 개발뿐만 아니라 언론·미디어 현장에서의 윤리 교육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예비 언론인 및 현직 언론인에 대한 언론 윤리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내실화 및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언론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언론 현장에서도 체계적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학교 및 언론 현장에서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4) 김춘옥(2008)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당시 국내 142개 언론 관련 학과에서 언론 윤리 혹은 언론법 강좌를 실제로 개설한 학과는 38개 학과였으며, 그중에서 언론 윤리와 언론법을 별도로 가르치는 학과는 5개에 불과하였다. 언론 윤리와 언론법을 별도로 개설한 5개 대학에서도 3개 대학의 경우 한 과목의 강좌만 개설되었고 2008년 당시 두 과목 모두 개설한 곳은 두 대학뿐이었다(김춘옥, 2008).

지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언론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교육 커리큘럼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주요 영역들을 선정해내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윤리강령의 경우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주요 해외 저널들을 중심으로 윤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저널만으로 언론 윤리 또는 미디어 윤리 연구의 전체 지형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Scopus 및 Web of Science에 등록된 커뮤니케이션 분야 저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에 포함된 저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연구 주제 분류의 경우 각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다양할 수 있고 연구 주제 영역 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나 서로 연관될 수 있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정교한 내용분석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부 영역의 하나를 선정하여 연구 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저널에 실린 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만큼 국내 연구와의 비교는 진행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와 해외에서의 연구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주요 해외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윤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수아·김세은 (2012). 한국 사회의 미디어 중독 연구 경향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23권, 5-45.
- 김수연·김대옥·최명일 (2013). 한국 광고홍보학 연구경향 언어 네트워크 분석: 「광고연구」, 「광고학연구」, 「홍보학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에 게재된 논문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5권 1호, 59-85.
- 김신미·이인숙·김세영·노윤구·박보현 (2017). 간호윤리 연구 동향 분석: 2009년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통권 53호, 406-424.
- 김영환·김우경·박지숙 (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디지털리터러시 연구 동향분석: 2011-2015년과 2016-2020년 비교분석. <리터러시 연구>, 통권 42호, 93-125.
- 김재영·양선희 (2007). 한·미 신문의 윤리적 실천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243-266.
- 김춘옥 (2008). 언론윤리 교육의 현황과 과제. <윤리교육연구>, 16권, 281-298.
- 김희섭·강보라 (2019). 국내외 허위정보 연구동향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권 3호, 291-315.
- 남재일 (2010). 직업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0호, 73-93.
- 박아란 (2022).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송희·이정아·김은하 (2016). 상담윤리(counseling ethics)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8권 2호, 267-289.
- 이상기·이정민 (2015). 한국의 '미디어 폭력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6권 2호, 395-429.
- 이승선 (2005).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1호, 227-262.
- 이승선·이재진 (2011).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언론과 법>, 10권 1호, 153-188.
- 이승선 (2014).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2011-2013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3권 1호, 1-28.

- 이재진 (2005). 언론윤리에 대한 언론과 사법부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6권 1호, 6-32.
- 이재진·이승선 (2008). 언론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언론과 법>, 7권 1호, 105-133.
- 이재진·박성순 (2015).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3호, 213-260.
- 이희은 (2018). 페미니즘 운동과 미디어 윤리: #미투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5권 3호, 120-157.
- 조소영 (2022). 개별 언론사 언론윤리강령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검토. <언론과 법>, 21권 3호, 49-92.
- 최지혜 (2007). <과학 윤리의 최근 연구 동향 분석: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유선·이연희·심지원 (2021). 인공지능 윤리와 로봇 윤리, 차이와 연속성-모두의 윤리로서 인공지능 윤리를 향하여. <철학·사상·문화>, 34권, 41-72.
- 한희정·정혜진 (2014). 국내 사이버불링 연구 동향: 개념과 연구 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4권, 180-217.
- 함정혜·최진선 (2017). 스포츠윤리의 연구동향과 과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5권 3호, 79-97.
- 강아영 (2017, 6, 20). 많은 기자들이 재교육 원하지만 시스템은 '작동 불능'. <한국기자협회>. URL: http://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1970
- 이소영 (2022, 10, 26). 기자의 지침서, 언론윤리강령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요. <쿠키뉴스>. URL: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60081>
- Baker, P. (2001). Moral panic and alternative identity construction in Usenet.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7(1), Retrieve from <https://doi.org/10.1111/j.1083-6101.2001.tb00136.x>
- Borchers, N. S., & Enke, N. (2022). "I've never seen a client say: 'Tell the influencer not to label this as sponsored'": An exploration into influencer industry ethics. *Public Relations Review*, 48(5), 102235.
- Bowen, S. A. (2016). Clarifying ethics terms in public relations from A to V, authenticity to virtue: BledCom special issue of PR review

- sleeping (with the) media: Media relations. *Public Relations Review*, 42(4), 564–572.
- Boyles, J. L. (2016). Resiliency in recovery: Slow journalism as public accountability in post-Katrina New Orleans. *Digital Journalism*, 4(4), 478–493.
- Choi, E. (2023). Brand integration, disclosure, and ethics in child-targeted YouTube videos: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Media Ethics*, 38(1), 34–47.
- Collier, B. (2021). The power to structure: exploring social worlds of privacy, technology and power in the Tor Projec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4(12), 1728–1744.
- Dörr, K., N., & Hollnbuchner, K. (2017). Ethical challenges of algorithmic journalism. *Digital Journalism*, 5(4), 404–419.
- Eberwein, T., & Porlezza, C. (2016). Both sides of the story: Communication ethics in mediatized worlds. *Journal of Communication*, 66(2), 328–342.
- Fiesler, C., & Proferes, N. (2018). “Participant” perceptions of Twitter research ethics. *Social Media + Society*, 4(1). Retrieve from <https://doi.org/10.1177/2056305118763366>
- Franzke, A. S. (2022). An exploratory qualitative analysis of AI ethics guidelines. *Journa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thics in Society*, 20(4), 401–423.
- Gravel-Patry, F. (2022). “A series of little high fives”: Mental health and digital habituation in women’s Instagram practices. *Feminist Media Studies*, 1–16. Retrieve from <https://doi.org/10.1080/14680777.2022.2149603>
- Greenberg, S. (2014). The ethics of narrative: A return to the source. *Journalism*, 15(5), 517–532.
- Hamo, M., Kampf, Z., & Weiss-Yaniv, N. (2019). Populism as a keyword and as a meta-discursive resource for positioning in mediated political discourse. *Discourse, Context & Media*, 29, 100283. 1–8.
- Hughes, N. (2021). Exploring vegan ideology through graffiti slogans.

- Discourse & Society*, 32(5), 575–597.
- Hunt, D. S., & Jalette, G. (2021).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A case study in visual framing ethics. *Journal of Media Ethics*, 36(2), 111–126.
- Jeffery, C. P. (2018). Too sexy too soon, or just another moral panic? Sexualization, children, and “technopanics” in the Australian media 2004–2015. *Feminist Media Studies*, 18(3), 366–380.
- Jin, D. Y., & Kwak, N. (Eds.) (2018). *Communication, digital media, and popular culture in Korea: Contemporary research and future prospects*. Lexington Books.
- Jobin, A., Ienca, M., & Vayena, E. (2019). The global landscape of AI ethics guidelines. *Nature Machine Intelligence*, 1(9), 389–399.
- Jones, J. (2021). Caring with the public: An integration of feminist mor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philosophy in journalism ethics. *Journal of Media Ethics*, 36(2), 74–84.
- Kieslich, K., Keller, B., & Starke, C.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by design. Evaluating public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ethical design 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 Society*, 9(1), 20539517221092956
- Kirat, M. (201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oil and gas industry in Qatar perceptions and practices. *Public Relations Review*, 41(4), 438–446.
- Kissas, A. (2020). Performative and ideological populism: The case of charismatic leaders on Twitter. *Discourse & society*, 31(3), 268–284.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Three Rivers.
- LaFollette, H. (1991). The truth in ethical relativism.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22(1), 146–154.
- Lee, H. (2021). Research trend analysis on research ethics in Korea. *Journal of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2(2), 11–16.
- Lewis, S. C., & Westlund, O. (2015). Big data and journalism: Epistemology, expertise, economics, and ethics. *Digital journalism*,

- 3(3), 447–466.
- Light, B., Burgess, J., & Duguay, S. (2018). The walkthrough method: An approach to the study of apps. *New media & society*, 20(3), 881–900.
- Lin, P., Abney K., & Jenkins, R. (Eds.) (2017). *Robot ethics 2.0 : From autonomous cars to artificial intellig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Lindgren, S. (2013). PIRATE PANICS: Comparing news and blog discourse on illegal file sharing in Swede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6(8), 1242–1265.
- Markham, A. N. (2018). Afterword: Ethics as impact—moving from error-avoidance and concept-driven models to a future-oriented approach. *Social Media + Society*, 4(3), Retrieve from <https://doi.org/10.1177/2056305118784504>
- Mathisen, B. R. (2019). Ethical boundaries among freelance journalists. *Journalism Practice*, 13(6), 639–656.
- McGlynn, C., Rackley, E., & Houghton, R. (2017). Beyond ‘revenge porn’: The continuum of image-based sexual abuse. *Feminist Legal Studies*, 25(1), 25–46.
- Mittelstadt, B. D., Allo, P., Taddeo, M., Wachter, S., & Floridi, L. (2016). The ethics of algorithms: Mapping the debate. *Big Data & Society*, 3(2), Retrieve from <https://doi.org/10.1177/2053951716679679>
- Morse, T. (2014). Covering the dead. *Journalism Studies*, 15(1), 98–113.
- Patching, R., & Hirst, M. (2021). *Journalism ethics at the crossroads: Democracy, fake news, and the news crisis*. Routledge.
- Paz, M. A., Mayagoitia-Soria, A., & González-Aguilar, J. M. (2021). From polarization to hate: Portrait of the Spanish political meme. *Social media + society*, 7(4), 20563051211062920.
- Powell, A. B., Ustek-Spilda, F., Lehuedé, S., & Shklovski, I. (2022). Addressing ethical gaps in ‘Technology for Good’: Foregrounding care and capabilities. *Big Data & Society*, 9(2), 20539517221113774.
- Robertson, C. J. (2007). An analysis of 10 years of business ethics research i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996–2005. *Journal of Business Ethics*, 80(4), 745–753.

- Salaudeen, M. A. (2022). From personal to professional: Exploring the influences on journalists' evaluation of citizen journalism credibility. *Journalism practice*, 16(10), 2040–2063.
- Schrier, K. (2019). Designing games for moral learning and knowledge building. *Games and Culture*, 14(4), 306–343.
- Singer, J. (2010). Journalism ethics amid structural change. *Daedulus*, 139(2), 89–99.
- Slavtcheva-Petkova, V., Nash, V. J., & Bulger, M. (2015). Evidence on the extent of harms experienced by children as a result of online risk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search.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1), 48–62.
- Stroud, S. R. (2019). Pragmatist media ethics and the challenges of fake news. *Journal of Media Ethics*, 34(4), 178–192.
- Toledano, M., & Avidar, R. (2016). Public relations, ethics, and social media: A cross-national study of PR practitioners. *Public Relations Review*, 42(1), 161–169.
- Weder, F., & Voci, D. (2021). From ignorance to resonance: Analysis of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dissensus and agonistic deliberation in sustainability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5, 24.
- Wellman, M. L., Stoldt, R., Tully, M., & Ekdale, B. (2020). Ethics of authenticity: Social media influencers and the production of sponsored content. *Journal of Media Ethics*, 35(2), 68–82.
- Youm, K. H., Sang, Y., & Park, A. (2018). Communication law in Korea: A topic for global research. In D. Y. Jin & N. Kwak (Eds.), *Communication, digital media, and popular culture in Korea: Contemporary research and future prospects* (pp. 59–79). Lexington Books.
- Zinkhan, G. M. (1994). Advertising ethics: Emerging methods and trends. *Journal of Advertising*, 23(3), 1–4.
- Zou, S. (2018). From inarticulacy to care: Exploring dialogical approaches to journalistic representation of ethnic minorities. *Journalism Practice*, 12(4), 382–399.

■ ABSTRACT

Trends in Ethics-related Research in Journalism, Media, and Communication Studies

- Focusing on Major Overseas Journals -

Yoonmo Sa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young Park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ethics-related research from 2013 to 2022 by examining major overseas journals in the fields of journalism and media communication. Among the journals listed in Web of Science or Scopus, search criteria were utilized to select the 20 most relevant journals, and after extracting 782 research papers from the selected journals,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m. The results show that in 2013, the journals published 33 research papers, while 143 were published in 2022. In additi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research was connected to the expansion of research topics. The study results demonstrate that ethics-related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on increasingly diverse topics in 15 areas classified in the study. Moreover, the study highlights key research trends in classical journalism and media communication, such as journalism ethics, communication ethics,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ethics, internet ethics, ethics related to future technology, ethics related to popular culture and traditional

media, and ethics education. Emerging trends in ethics research reflected in topics such as moral panic, social movements, ethical theory and philosophy, and research ethics were also identified. In addition to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ethics research brought about by emerging technologies,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to consider how to connect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accumulated through ethics-related research to media education. Regarding the research methods, most studies (72%) used qualitative methods, followed by quantitative methods (20%) and a mix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8%). In particular, the us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howed an increasing trend over time over the 10-year study period, confirming the predominance of conducting ethics-related research in journalism and media communications. This study also presented i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journalism ethics, media ethics, content analysis, research trends

[논문투고일 2023. 3. 6. 논문수정일 2023. 4. 3. 게재확정일 2023. 4. 5.]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결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신 상 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법학박사(Dr. jur.)

■ 국문초록

범죄사건 보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항상 보도대상자의 기본권(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과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두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범죄사건 보도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대상자의 식별정보가 알려질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원칙적으로 언론인은 가명이나 모자이크 등을 사용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피의자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경우에 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보도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에 상대적 우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충돌하는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익형량을 하여 그러한 보도가 허용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아동의 실제 법익침해 가능성, 피해아동의 의사, 아동학대행위자의 인격권, 개별적 이익형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라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에 중점을 두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 shs0325@hanmir.com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게,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피해아동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없거나 피해아동이 그 보도에 동의하는 경우이면서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경우가 그러하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언론인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즉 언론인이 민감한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식별정보(신상정보), 범죄사건 보도, 인격권,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 차

- I. 서론
- II. 대상결정: 헌재 2022. 10. 27. 2021헌가4
 - 1. 심판대상조항
 -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판단의 요지
 -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요지
- III. 대상결정에 대한 평가
 - 1. 충돌하는 기본권
 - 2. 헌법재판소의 논거 및 그에 대한 반론
 - 3. 소결
- IV. 개정 방향의 모색
 - 1. 해외 입법례
 - 2. 시사점
 - 3. 개정안의 제시
- V. 결어

I. 서론

2019년 9월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들을 폭행하고 수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된 아이들의 폭행 증언과 함께 A씨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하여 방송하였다. 아동학대행위자로 지목된 A씨는 이 방송사 기자와 대표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¹⁾ 및 제62조 제3항²⁾을 적

1)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2)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③ 제35조 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

용하여 방송사 기자와 대표(이하 ‘제청신청인’)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³⁾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제1조), 아동학대⁴⁾를 저지르는 아동학대행위자⁵⁾로부터 아동⁶⁾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하여, 가해자의 신원 공개가 피해자의 신원 공개로 이어져서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런데 이 규정이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사회적 고발을 막는 통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방송사에 제보를 한 사람들도 피해아동들의 부모였고, 오히려 정식 재판에서 제청신청인의 무고함을 호소하였다.⁷⁾

그 후 제청신청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2020.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2), 2020년 4월 3일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09). 또한 제청신청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는데(2020초기321),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에 대해 2021년 1월 26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의 한계, 즉 언론이 어느 정도까지 자

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김도연 (2020. 1. 10). OOOO에 재갈 물린 아동학대처벌법. <미디어 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47>.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상의 아동학대로서(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6)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상의 아동으로서(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각주 3)의 기사 참조.

유롭게 보도할 자유가 있는지가 다시 한번 문제 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뒤따른다(헌법 제21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3조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제4조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할 것,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1항에서도 언론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인격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보도에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나 범죄 신고인(고소인·고발인) 등의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제기되지 않는다. 여러 특별법에서도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공개·보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⁸⁾ 그런데 범죄행위자의 인적 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고 보더라도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언론의 기본권’과 ‘범죄행위자의 기본권’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국민들의 법 감정과 사회적 의식이 계속 변함에 따라 그 해결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8)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제50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제4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제17조 제1항;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48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1조 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다만,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없다) 등.

의 심사대상이 된 위 사안은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인데, ‘범죄행위자의 기본권’ 이외에 ‘피해아동의 기본권’까지 문제 되는 특수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논의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실익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II). 그 후 헌법재판소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법률개정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III). 특히 이 결정에서는 ‘언론’이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취재한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보도의 헌법합치성이 문제 되었으므로,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언론에 자료를 넘김으로써)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또는 언론이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를 보도하는 문제 또는 언론이 수사·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II. 대상결정: 현재 2022. 10. 27. 2021헌가49)

1. 심판대상조항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신문사나 방송사의 편집인·발행인·그 종사자 등(이하 ‘언론인’)이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이하 ‘식별정보’)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이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 중 언론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

9) 이하에서는 결정의 주요 내용을 발췌·수정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판단의 요지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제1조), 심판대상조항의 모델이 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 제2항¹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주된 가해자가 부모 등의 보호자인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의 신원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피해아동의 신원도 쉽게 노출되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2차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신원 노출의 위험성이 적거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컨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도 항상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아동학대행위자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오히려 아동학대행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공적 인물이나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이 수사기관 내부 심의를 거쳐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상 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10)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이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론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하므로, 국민의 알 권리¹¹⁾를 제한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나 알 권리도 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두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여기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직접적 보호뿐만 아니라 학대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보호사건에 있어서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 역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11) “알 권리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국가기관 등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기본권으로(헌재 1991. 5. 13. 90헌마133 등), 신문, 방송 등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해당한다.”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90% 이상)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의 식별정보의 보도는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오늘날 온라인 매체의 발달, 방송의 과급력,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사이의 보호자 관계를 통해 피해아동이 특정될 수도 있으므로, 2차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보호 여부나 국민적 관심의 차원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기관 내부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이루어지는 사안(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과는 보호대상과 목적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물론, 피해아동 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아동 측이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의 위험성을 무

릅쓰고라도 그러한 보도를 원할 수 있지만, 국가로서는 피해아동이 2차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아동의 신원 노출 위험성이 적거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피해아동 측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원하는 경우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금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인은 심판대상조항의 허용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행위자를 익명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적 관심이 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보도방식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언론인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Ⅲ. 대상결정에 대한 평가

1. 충돌하는 기본권

일반적으로 언론인이 범죄피의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일반적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사례로 취급된다(권태상, 2020, 46-47쪽; 이경렬, 2020, 77쪽). 이 경우 비례성원칙에 따른 비교

형량의 과정을 거쳐서 그 보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¹²⁾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형식적으로 피해아동이 아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아동학대행위자(피의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의 입법목적은 아동보호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도 보호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취지는 피해아동의 보호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인격권 등은 충돌하는 기본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 피의자의 기본권과 언론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라기보다는 - ‘피해아동의 인격권 등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사례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보호 여부나 국민적 관심의 차원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은 일반적인 언론의 피의자 식별정보 보도 사건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2. 헌법재판소의 논거 및 그에 대한 반론

가.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점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행위자의 90% 이상이 부모, 친인척, 양육자 등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라는 점,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 번 공개된 정보는 온라인 공간에서 순

¹²⁾ 대판 2009. 9. 10. 2007다71. 이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른 법익형량을 말한다 (한수용, 2021, 531쪽).

시간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쉽게 특정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신원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의 신고를 꺼리게 될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정법원이 지적인 것처럼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신원 노출의 위험성이 적거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특히 본 사건 처럼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부모나 친인척이 아니라 교육자인 보호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신원 노출의 위험성이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인원이 다수인 경우라면 아동학대행위자인 교육자의 식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 보도 과정에서 특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추가한 것이 아닌 한 - 피해아동이 그 즉시 특정되는 것도 아니다.¹³⁾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전면적 보도금지 조치는 언론의 자유에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입법자 역시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일 경우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본 사건과 같은 사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⁴⁾ 그러므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

13)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집요한 추적이 이루어져서 신원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언론의 보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별도의 위법행위일 뿐이다. 이와 같은 예상 밖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를 상정하기 어렵다. 심지어 익명으로 보도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의 정보가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 각주 3)의 기사 중 일부를 발췌: “지난 2012년 9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안홍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관여한 제정법”이라며 “아동학대 등 아동 폭력 가해자 70~80%는 부모다. 그렇다 보니 (부모가 특정되면) 피해아동이 쉽게 특정되는 문제를 더 엄격히 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법 통과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적 있는데, (OOOO 보도 사례는) 입법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보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보도 자체의 전면적 금지가 아니라는 점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만을 금지할 뿐이라고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이나 모자이크 등을 사용하여 보도를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의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제정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아동학대의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즉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명이나 모자이크를 사용한 보도만으로는 충분한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권력층이 개입되어 형사소추가 쉽지 않은 경우, 사건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이 바로 사건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아동의 2차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인 학교의 교원이나 학원의 원장 등의 잔혹한 학대행위가 일부 피해아동에 대해서만 은밀하게 행해진 경우라면, 그들의 식별정보를 보도해야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다른 아동 및 그 부모들이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그 결과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추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변인으로부터 관련된 제보를 받음으로써 진상규명에 더욱 가까워질 수도 있다(김송옥·이인호, 2022, 10쪽).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

는 국민의 알 권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의 보도의지를 위축시킴으로써 언론의 감시기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와 다르다는 점

언론이 아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식별정보나 범죄혐의를 공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행위는 ‘피의자의 일반적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강서영, 2021, 38-49쪽). 더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할 여지가 있다(류영재, 2018, 146쪽 이하; 이경렬, 2020, 76쪽). 이러한 취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되고,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437호, 2022. 7. 25. 시행)이나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8호, 2021. 1. 1. 시행)에서도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인격, 사생활, 범죄혐의, 초상, 실명 등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¹⁵⁾

하지만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도 법률상 인정된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¹⁶⁾와 성폭력처벌법 제25조¹⁷⁾가 그 대표적 예이

15)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한 김혁돈(2022, 178-181쪽) 참조.

16)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과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도 예외적 정보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 및 ‘공적(公的) 인물’의 실명을 일정한 요건 하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위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적(公的) 인물의 직책을 열거하는 형태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¹⁸⁾ 이렇게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을 통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정당화하는 법률규정들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요건이 되는 요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이다 (강서영, 2021, 62쪽). 더 나아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 인권보호 등의 공익’ 등도 공개를 허용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결정에서,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는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을 공개(=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허용될

17)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이에 따르면, ‘공적 인물’이란 ① 고위 공직자(차관급 이상의 임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②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의 장, 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⑥ 위 ①-⑤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수 있다고 보았다.¹⁹⁾

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의 피의자 식별정보 보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과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의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도금지의 주된 목적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이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인격권 등의 보호는 부수적 효과에 해당한다(아래 <표 1>의 ①). 반면,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공개금지의 목적은 범죄행위자(피의자)의 인격권 보호이다(<표 1>의 ②). 그런데 이를 통해 제한(침해)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이란 점은 서로 동일하다(<표 1>의 ③). 그러므로 앞 단락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제한되는 이익에 더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①<③인 경우)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②<③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행위자(피의자)의 식별정보 보도·공개가 가능한 예외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해야 한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예외적으로 공개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③)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의 경우에는 이 이익(③)에 더해 언론의 자유 보호라는 이익(<표 1>의 ④)까지 제한되는 사례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②보다 ③의 우위만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신상정보의 공개가 허용하는데, 후자의 경우 ①보다 ③+④의 이익의 우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19)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대법원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고 보면서, 전자의 이익이 우월한 경우의 예로서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지닌 중대한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사안의 비범성으로 인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어서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대판 2009. 9. 10. 2007다71).

〈표 1〉 각 법률에서의 이익충돌

	아동학대행위자 식별정보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금지 (예외적 허용: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25조)
보호이익 (목적)	①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 (부수적: 범죄행위자의 인격권 보호)	② 범죄행위자의 인격권 보호
제한되는 이익	③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의 이익 + ④ 언론의 자유(감시기능) 보호	③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의 이익

물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헌법재판소의 입장)는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서로 다르다는 점(=①과 ②가 상이함)을 근거로 하여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라는 이익이 언제나 더 중요하므로(①>②),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와 달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의 보도를 예외 없이 금지하더라도 비례성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도 - 아동보호사건이 아닌 그 밖의 범죄사건에서 -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나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따라 그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데, 단지 아동학대사건이 아니라는 우연적 사정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 경우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아동의 지인인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인데, 규정상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민의 알 권리와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하여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 제2항과 성폭력처벌법 제25조 제2항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명문규정상 ‘아동인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우려’까지 고려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나 성폭력처

벌법 제25조에 따라 기계적으로 피의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서 피해아동의 인격권까지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이 당연할 것이고, 실제로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²⁰⁾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①)의 문제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①의 이익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서 언론인이 식별정보 보도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아무런 예외 없이 - 그리고 사전에 심의위원회 등 제3자의 심사를 받지 않고 - 공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 주체가 아동학대행위자인지 또는 그 밖의 범죄행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서 그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체계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피해아동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거의 없어서 ①의 이익이 약해지고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와 성폭력처벌법 제25조의 예외적 요건들을 갖춘 관계로 ③+④의 이익이 월등히 큰 사례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가 가능한 영역이 반드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인을 통한 피의자의 식별정보 보도·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라. 피해아동 측이 보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아동보호의 목적 때문에 보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피해아동 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라는 심판대상규정의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그 목적이 달

20)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한 번씩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동선 (2023. 1. 16). ‘피의자 신상공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이유. <일요신문>. URL: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44490.

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적에 중점을 두면서 피해아동 측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만을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이러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설득력이 있는지 자세히 논증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논리가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목적은 -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아니라 -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즉 피해아동 측이 신원 및 사생활 노출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 공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사회적 고발을 통한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론인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이는 피해아동 측의 의사를 어떠한 조건 하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 그 식별정보 보도가 허용될 여지가 생기므로, ‘피해아동 측’에는 피해아동과 그의 부모나 가까운 친인척 정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의 동의의사를 해석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이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아동의 의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의 동의의사를 어느 정도까지 성인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인데, 오늘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어린이 단계를 지난 청소년들의 경우까지 모두 미성숙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동의의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법적인 관점에서 의사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적어도 아동 전문가 등을 투입하여 아동에게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로 인한 영향·파급효과 등을 모두 정확하게 설

명해 준 후 - 부모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 스스로 진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아동의 동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절차나 제도 마련의 가능성에 대해 일절 고려함이 없이 피해아동의 동의의사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피해아동이 원하지도 않는 국가의 보호를 강제한다면, 오히려 피해아동을 불행하게 만들고 입법목적과도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아동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적 역시 피후견자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의 명시적 의사에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3. 소결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피해아동의 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신원 노출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위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아동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적고 피해아동 측에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로서 그 보도에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한 예외의 존부를 판단하는 주체로서 언론인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법원, 위원회 등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을 상정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아동의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 이처럼 예외적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그 판단 절차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의 목적만을 강조한다면, 언론인의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아동의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되는 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동학대처벌법 제 62조 제3항과 결부되어 단순한 보도금지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 하에 이러한 보도금지가 민사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제재까지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전면적 보도금지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고 논증한 이상, 이를 그대로 형사처벌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언론인의 그러한 보도행위를 예외 없이 그리고 차등 없이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수단성(ultima ratio)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IV. 개정 방향의 모색

언론인의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려면,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와 관련된 부분을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아동학대행위자(피의자)의 식별정보 보도에 대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1. 해외 입법례

가. 독일

독일에서는 수사가 종료되기 이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포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언론이 피의사실이나 피의자에 대해 취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언론은 언론·표현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관점에서 피의자의 수사단계에서도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다(이원상, 2019, 222쪽). 왜냐하면 국가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전제인 다원적 의사형성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수웅, 2021, 765면; Branahl, 2019, 84쪽; Fechner, 2021, Kap.1 Rn.10). 이처럼 독일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동시에 일반 공중의 정보획득의 이익, 즉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 이 공중의 정보이익은 기본권의 하나인 정보자유권(Informations-freiheit)의 집단적 형태로 발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Fechner, 2021, Kap.3 Rn.10).

물론,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질 때에는 당연히 피의자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제한이 뒤따른다(Roxin & Schünemann, 2022, § 18 Rn.20). 무죄추정원칙이나 공정한 절차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보도 제한의 근거가 됨은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Hillebrand, 2020, 71-78, 161쪽; Krey & Heinrich, 2019, Rn.484). 독일 언론위원회(Presserat)가 제정한 언론장령(Pressekodex)²¹⁾에서도 언론의 취재·방송 등에 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침 8.1.에서 언론은 당사자의 사생활·인격권 보호의 이익보다 대중에 대한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Interesse)’이 월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범죄혐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신상정보(이름, 사진 등)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혐의의 경중, 절차진행의 단계, 범죄(혐의)자가 알려진 정도, 범죄(혐의)자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선언한다. 또한 지침 8.2.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나 그 유족 등이 ‘동의’하거나 당사자의 ‘공적 생활(öffentliches Leben)’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 더 나

21) Ethische Standards für den Journalismus. URL: <https://www.presserat.de/pressekodex.html>.

아가 지침 8.3.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나 사고를 보도할 때 신원을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언론강령은 언론이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언론인이 피의자의 식별정보를 공개·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은 성격의 법률과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위 ‘언론형법’과 같은 형태의 단일법도 존재하지 않는다(Fechner, 2021, Kap.6 Rn.103). 그러므로 형법전 및 기타 법률들의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 형법 제185조 이하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193조에 따라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²²⁾ 그에 따라 언론인이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식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겠지만, 명예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보도를 한 것만으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독일형법 제201조a는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을 촬영·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서 언론이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제4항에 따르면, 가별적인 개별 행위가 예술이나 과학, 연구나 강의, 시사(時事)적 사건(Zeitgeschehens)이나 역사에 대한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등 ‘정당한 이익이 월등한 것으로(überwiegend)’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조각된다.²³⁾ 물론, 언론인이 직접 사진·영상을 촬영·공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피해자나 가해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한 것에 그친 경우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위 규정들이 언론인의 보도행위 그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언론인이 아동학대범죄의 행위자를 보

22) 위 규정들에 대해 자세히는 이진국(2002, 57-62쪽) 참조.

23) 독일형법 제201조a에 대해 자세히는 신상현(2021, 89-93쪽) 참조.

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²⁴⁾

한편, 독일 예술저작권법(KunstUrhG)은 ‘초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제22조, 제23조, 제33조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조항이다.

제22조

초상(Bildnis)은 촬영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할 수 있다.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촬영대상자가 보수를 받고 촬영하게 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촬영대상자의 사망 후 10년 동안은 촬영대상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서 유족이란 촬영대상자의 생존 배우자나 동거인 및 자녀를 말하고,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촬영대상자의 부모를 말한다.

제23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동의가 없더라도 초상을 유포하고 공연히 전시할 수 있다.

1. 시사(時事)(Zeitgeschichte) 영역에 속하는 초상
2. 그 사람이 단지 주변 경관 또는 그 밖의 지형의 부속물로서 함께 촬영된 사진
3. 집회, 행진 및 이와 유사한 사건에 그 사람이 참여하여 촬영된 사진
4. 주문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유포 또는 전시가 예술의 이익에 높이 기여하는 초상

(2) 그러나 유포 및 전시로 인하여 촬영대상자의 정당한 이익(berechtigtetes Interesse)이, 촬영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포 및 전시를 할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²⁴⁾ 그 밖에 선거비밀 침해죄(제107조c), 국민선동죄(제130조), 비밀침해죄(제201조), 정보탐지죄(제202조a), 스토킹죄(제238조) 등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법 규정들에 대해 자세히는 Fechner(2021, Kap.6 Rn.103-112) 참조.

제33조

- (1) 제22조 및 제23조를 위반하여 초상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제1항의 행위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언론인이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초상을 보도·공개한 경우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제33조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서 보호되는 ‘초상’에는 내밀한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적 영역에서의 모습도 포함된다(Branahl, 2019, 207쪽). 원칙적으로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초상을 공개한 자가 동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Branahl, 2019, 209쪽). 제23조 제1항은 동의가 없어도 되는 예외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익’의 존부를 따져야 한다.²⁵⁾ 제23조 제1항의 사유 중 ‘ 시사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 함은 사안의 내용이 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미 공중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일체의 사건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사건도 포함된다(이진국, 2002, 113-114쪽; 안수길, 2021, 109쪽). 일반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범죄와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그 초상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지만, 아직 수사단계에 머물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정도,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의 신원정보의 보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이진국, 2002, 114-116쪽). 결국 언론인이 시사 영역과 관련되는 촬영대상자의 초상을 보도하려 하는 경우, 우선 그의 동의 여부를 살피고 난 후 동의가 없다면 공중의 정보이익과의 비교량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결국 언론장령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당사자(피의자,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인격권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

25) 위 예술저작권법 규정들에 대해 자세히는 이진국(2002, 111-119쪽)과 Schertz(Hb-Pr, 2019, § 12 Rn.46 ff.) 참조.

리 또는 언론의 자유라는 ‘정당한 이익’이 월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론인이 피의자의 식별정보를 촬영·공개·보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즉 아동학대사건이라 하여 전면적으로 그러한 보도가 금지되고 처벌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정당한 이익’의 존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식별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법률규정들의 형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레바흐(Lebach)’ 판결²⁶⁾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범죄보도 시 범죄자의 이름, 초상 등을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들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나,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언론인이 그 범죄를 보도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시사적 사건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상 정보를 공개할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본다(Branahl, 2019, 239쪽; 권태상, 2020, 49-50쪽).²⁷⁾

위처럼 언론인의 보도행위 그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신원이 공개된 피의자나 피해자가 언론인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독일 민법 제823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등 민사상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이수중, 2016, 99, 116쪽; Branahl, 2019, 183쪽; Fechner, 2021, Kap.4 Rn.120ff.).²⁸⁾ 이익형량을 하는 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은 민사사건에서도 받아들여졌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범죄혐의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클수록 피의자 정보의 공개에 대한 공중의 이익이 커지고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사람일수록 그 신원정보를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권태상, 2020, 50-51쪽).

26) BVerfGE 35, 202.

27) 다만, 이 결정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논리가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로는 허황(2017, 110쪽).

28)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피의자의 민사상 청구를 인용하는 형태로 국가의 국민(피의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Lindner, 2008, 213쪽).

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도 언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두 이익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중요한 구성요건으로서 어느 한 쪽에 우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형량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Frohner & Haller, 2016, Vor § §6-7c Rz.1).

형사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형법도 제111조 이하에서 비방이나 모욕에 관한 죄를, 제120조a에서 무단 사진촬영·공개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법과 관련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서도 언론인이 피의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의 차원에서 언론법(MedienG)이 단일법으로서 규정되어 있고, 이 언론법에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²⁹⁾ 독일에서도 이 입법례(특히 언론법 제7조a, 제7조b)를 참고하여 자세한 연방법 차원의 규정을 신설하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안수길, 2021, 113-114쪽) 매우 자세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은 제5절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단계의 피의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제29조에 명예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을 뿐이다. 반면, 피의자·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민사적 대응수단에 대해서는 제3절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Frohner & Haller, 2016, Vor § §6-7c Rz.3). 제6조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Berka, Mg-Pk, 2019, § 6 Rz.1; Frohner & Haller, 2016, § 6 Rz.1), 제7조는 최고 인격적 사생활 영역(höchstpersönlicher Lebensbereich)³⁰⁾이 침해된 경우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

29) 반면, 독일에서는 연방 차원이 아니라 각 주에서만 언론법을 규정하고 있지만(개별 주법의 내용과 형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여기에서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논의로 하고, 식별정보나 혐의사실 보도·공개와 관련된 제7조a와 제7조b만을 검토한다.

제3절 인격 보호(Personlichkeitsschutz)

제1장 손해배상의 요건

제7조a 특수 사례에서 신원 공개에 대한 보호

(1) 미디어(언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 초상(Bild) 또는 다수인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지면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사람은 인격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미디어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1. 법원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의 피해자(형사소송법 제65조 제1호)
2. 법원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3. 국민의회의 수사위원회에서 정보제공인·참고인(Auskunftsperson)으로서 청문을 받은 사람

다만, 그 사람의 공적 지위, 그 밖의 공적 생활(öffentliches Leben)과의 관련성 또는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적 사항의 출판·공개에 대한 월등한 공공의 이익(überwiegendes Interesse der Öffentlichkeit)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a) 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 또는 초상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사람은 인격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미디어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언급된 사람의 친족(형법 제72조)으

30) 일반적으로 가족, 건강, 성생활, 종교적 관점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속한다(Berka, Mg-Pk, 2019, § 7 Rz.6; Frohner & Haller, 2016, § 7 Rz.3, 7).

로서 형사소송법 제65조 제1호 b목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법원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의 증인이었던 사람

다만, (제1항과 같은) 인적 사항의 출판·공개에 대한 월등한 공공의 이익(überwiegendes Interesse der Öffentlichkeit)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1항a가 정한 사람이 문제되는 경우, 출판·공개가 당사자의 최고 인격적 사생활 영역(höchstpersönlicher Lebensbereich)을 침해하거나 그 노출시키는 경우 또는 피해자, 친족 또는 증인의 안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람이 문제되는 경우, 출판·공개가 청소년 또는 경죄(Vergehen)와만 관련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생계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국민의회, 연방의회, 연방하원, 주의회 또는 이러한 일반 대표 기관 중 하나의 위원회에서 열린 심리에 대한 진실에 합치하는 보도의 경우

2. 특히 형사사범의 목적 또는 안전경찰(=경찰의 예방)의 목적을 위하여 인적 정보의 공개가 공적으로 명해진 경우

3. 당사자가 출판·공개에 동의했던 경우 또는 출판·공개가 당사자가 미디어에 표명한 의사에 기한 것인 경우

4. 방송국의 직원이나 수입자가 언론에 요구되는 주의(Sorgfalt)를 소홀히 하지 않고 생방송으로 직접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5. 웹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의 소유자나 그 직원 또는 수

임자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매체를 공개한 경우

제7조b 무죄추정 보호

- (1) 미디어에서 범원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지만 아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그 사람을 단순 혐의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표현한 경우, 그 사람은 인격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미디어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 1. 국민의회, 연방의회, 연방하원, 주의회 또는 이러한 일반 대표 기관 중 하나의 위원회에서 열린 심리에 대한 진실에 합치하는 보도의 경우
 - 2.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한 진실에 합치하는 보도를 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표명한 경우
 - 3. 당사자가 출판·공개에 동의했던 경우 또는 출판·공개가 당사자가 미디어에 표명한 의사에 기한 것인 경우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또는 미디어에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를 철회하지 않았던 경우
 - 4. 방송국의 직원이나 수입자가 언론에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생방송으로 직접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 4a. 웹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의 소유자나 그 직원 또는 수입자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매체를 공개한 경우
 - 5. 제3자의 진술을 진실에 합치하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인용된 진술을 알리는 데 대해 월등한 공공의 이익(überwiegendes Interesse der Öffentlichkeit)이 존재했던 경우

언론법 제7조a 제1항에 의하면, 언론기관이 ‘피해자’나 ‘피의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여 그들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의 보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유죄판결 확정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Frohner & Haller, 2016, § 7a Rz.1). 동조 제1항에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 초상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항들, 예를 들어 이니셜, 직업, 거주지, 근무지, 독창적인 취미 등이 포함된다(Berka, Mg-Pk, 2019, § 7a Rz.12; Frohner & Haller, 2016, § 7a Rz.7). 하지만 위처럼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언론인이 ‘공적 지위’를 지닌 당사자의 ‘공적 생활’³¹⁾에 대해 보도를 하는 등 ‘월등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제1항 후단). 즉 보도대상자의 지위, 알려진 정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Frohner & Haller, 2016, § 7a Rz.8-9). 시사 영역에 속하는 공인에는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유력 경제인, 유명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 등이 포함된다(Berka, Mg-Pk, 2019, § 7a Rz.28). 또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범위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다면 보도대상자의 이익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Frohner & Haller, 2016, § 7a Rz.10). 반면, 성범죄나 아동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고·보호기능의 차원에서 피의자의 이름 등에 대한 정보를 보도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그러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다면 부모 등이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Frohner & Haller, 2016, § 7a Rz.15). 또한 국가기관이 집단적으로 개입하여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국가범죄의 경우에도 보도로 인한 경고기능의 우위가 인정된다(Berka, Mg-Pk, 2019, § 7a Rz.31). 결국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연방대법원 판례도 ‘제한 없는 보도’와

31) 이는 사법적·정치적 영역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Frohner & Haller, 2016, § 7a Rz.1).

‘식별정보의 보호’ 중 어느 한 쪽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Berka, Mg-Pk, 2019, § 7a Rz.5).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최고 인격적 사생활 영역이나 안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제1호)와 ‘피의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경죄³²⁾만을 범했거나 생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제2호)에는 일단(jedenfalls)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피의자’와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범죄가 중죄인지 경죄인지에 따라 보도의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즉 경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내용이 경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식별정보 공개로 인한 침해가 공중의 정보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것이다(Berka, Mg-Pk, 2019, § 7a Rz.21).

제3항은 손해배상청구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인적 사항이 공개된 사람이 이에 ‘동의’한 경우가 그러하다(제3호). 이 동의는 실제로 행해져야 한다. 의사표시의 시기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2년이나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Berka, Mg-Pk, 2019, § 7a Rz.37; Frohner & Haller, 2016, § 7a Rz.22).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보도·공개에 대해 동의를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자연적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에 흠결이 있다고 여겨지면 동意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Frohner & Haller, 2016, § 7 Rz.14).

더 나아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에는 언론법 제7조b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³³⁾ 그가 인적 사항의 공개에 ‘동의’를 하였거나 ‘일정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그렇지 않다.

32) 3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고의범은 중죄(Verbrechen)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죄(Vergehen)이다.

33) 언론법 제7조, 제7조a, 제7조b의 요건이 중복적으로 충족되면, 당사자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Frohner & Haller, 2016, § 7 Rz.2).

한편, 오스트리아에도 저작권법(UrhG) 제78조에 초상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는 촬영대상자의 초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초상에 관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Dokalik & Zemann, 2018, § 78 E 2, 6, 7).

제78조 초상 보호(Bildnischutz)

- (1) 사람의 초상은 촬영대상자의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Interesse)이 침해되는 경우 또는 촬영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공개가 허가되거나 명해지지 않는 한 가까운 유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공연히 전시하거나 그 밖의 공개의 방식으로 유포할 수 없다.
- (2) 제41조³⁴⁾ 및 제77조 제2항³⁵⁾과 제4항을 준용한다.

여기서의 ‘초상’이란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인식할 수 있게(erkennbar) 하는 그 밖의 특징적 요소도 포함된다(Dokalik & Zemann, 2018, § 78 E39-42; Frohner & Haller, 2016, Vor § § 6-7c Rz.11). 이 경우에도 촬영·공개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다(Dokalik & Zemann, 2018, § 78 E16, 18). 범죄보도를 하는 경우, 범죄혐의가 중할수록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줄어든다(Dokalik & Zemann, 2018, § 78 E82). 촬영대상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Frohner & Haller, 2016, Vor § § 6-7c Rz.14). 하지만 - 독일에서와 달리 - 초상권 침해에 대해 민사적 대응수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형사처벌은 가하지 않는다(Dokalik & Zemann, 2018, § 78 E345, § 91 E14). 언론법 제7조a, 제7조b와 저작권법 제78조가 동

34)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행정절차, 의회절차 또는 법원절차의 적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35) 가까운 유족의 정의 규정이다.

시에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전자가 우선 적용되어, 후자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전자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한다(Dokalik & Zemann, 2018, § 78 E222; Berka, Mg-Pk, 2019, Vor § § 6-8a Rz.12).

정리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언론인이 ‘피의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그의 동의 여부, 그의 공적 지위나 공적 생활 관련성 여부, 보도의 진실성 여부, 보도에 월등하고 정당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의 민사책임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 명예 등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 보도행위만으로 즉시 가벌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 그 이외의 국가들³⁶⁾

그 밖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여러 형태의 법률(민법, 저작권법 등)에서 언론의 책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초상 등 식별정보 보도의 문제를 인격권 침해의 문제로 다룬다. 예를 들어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법제를 취하고 있는 스위스(Bohne, Hb-Pr, 2019, § 63)뿐만 아니라 영국(Trebes & Westkamp, Hb-Pr, 2019, § 60), 폴란드(Targosz, Hb-Pr, 2019, § 62), 스페인(Trebes, Hb-Pr, 2019, § 64), 이탈리아(Trebes & Stein, Hb-Pr, 2019, § 65)와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언론인의 법적 책임으로서 민사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언론인이 진실임을 믿었거나 보도에 공적 이익이 있거나 보도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등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형법 등에서 명예,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³⁷⁾ 언론인이 보도대상자(피의자, 피해자 등)의 식별정보를

36)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법률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37) 이 경우에도 보통 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스위스 형법상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Nobel,

보도한 행위 자체에 대해 바로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2. 시사점

해외에는 우리나라 심판대상조항처럼 아동학대범죄에 한정된 특별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이익보다는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의 관점에서 언론의 보도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도 ‘피해아동의 기본권’이 아니라 ‘범죄행위자의 기본권’과 ‘언론의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 문제되고, 양자를 형량하는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 입법례가 기본적으로 ‘피해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심판대상조항과 직접 비교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아동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성이 거의 없고 피해아동이 보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2차 피해 방지라는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이러한 사례는 ‘범죄행위자의 기본권’과 ‘언론의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 문제되어 보도에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 사례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해외 입법례는 심판대상조항과도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과 형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자를 비교해 보면, 해외 입법례는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여 언론인이 피의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것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 가급적 민사책임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동의나 정당한 이익(공익)의 존재를 고려하여 엄격한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촬영·공개 등 일부 특별한 행위태양을 가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나 정당한 이익(공익)이 있음이 인정되면 그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법률 문구만 봤을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요건을 피의자에 대한 그것과 달리 취급하지도 않는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언론인의 식별정보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를 취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당사자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되어야 할 영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식별정보 보도행위에 대해 아무런 예외 없이 바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매우 이례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3. 개정안의 제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법률상으로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단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식별정보가 널리 퍼지는 것을 감수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³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아동학대행위자가 가족이 아닌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거의 없거나 피해아동 측에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신원정보 공개를 감수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인격권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목

38) 각주 8)의 예 참조.

적이 사라지고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와 비교형량을 거쳐서 그 보도에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 식별정보 보도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해외의 입법 경향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변경해야 할 부분은 밑줄 처리).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한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우선 아동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의 경우에도 스스로 보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식별정보 보도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이나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단서 등의 경우에도 피해자, 신고인 등의 동의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없거나 피해아동이 그 보도에 동의하는 두 가지 예외사례에서는 식별정보 보도가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가 아닌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언론인은 정말로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이 특정될 위험성이 없는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피해아동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동의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아동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서 피해아동에게 보도의 효과에 대해 면밀히 설명하여 그 동의의사를 엄격히 해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동의의사의 진정성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두 사례의 경우 보도 허용의 기준으로서 - 성폭력처벌법 제25조와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이 동일하게 존재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의 존부는 다른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범죄의 강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아동학대범죄는 중범죄에 속하므로 공익 인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주체가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대기업 고위직 임원, 유명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 등 공적 인물³⁹⁾인 경우에는 언론의 감시라는 공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김하열, 2023, 494-495쪽; 성낙인, 2023, 1332-1333쪽).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예외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 식별정보의 보도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제62조 제3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언론인은 행사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언론인

39) 각주 18)의 예 참조. 헌법재판소도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에서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헌법적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이 이를 넘어서는 더 큰 법익침해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죄(제307조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제70조 이하), 성폭력처벌법상 무단촬영·유포죄(제14조 등) 등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가별성의 흠결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검토하였다. 만일 위 규정들마저 적용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손해배상·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등 민사적 대응수단을 이용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면 된다.

하지만 위 예외적 보도허용 사유에 대한 판단을 언론인에게만 맡긴다면, 보도에 집중한 나머지 면밀한 검토 없이 - 피해아동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가 이루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남용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판단주체로서 제3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취지로 성폭력처벌법 제25조와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이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⁴⁰⁾ 2021년 11월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하여 그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립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⁴¹⁾

따라서 특히 언론인이 피의자의 식별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① 사전

40) 네이버 지식백과. URL: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04793&cid=43667&categoryId=43667>.

41) 박수지 (2021. 11. 11). 지역마다 다른 범죄자 신상공개 결정, 컨트롤타워 생긴다.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8936.html.

에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별도의 독립적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게 하거나 ② ‘법원’이 그러한 보도의 허용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객관적인 제3자로서 월등한 공공의 이익의 존재 여부나 피해아동의 동의의사의 진위를 심사하여 보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인 것이다. ①의 경우 유권 해석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인이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하여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 시 그 사실을 자막이나 육성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사법적으로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②이다. 이 경우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은 충돌하는 두 법익(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형량하여 방송·상영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⁴²⁾ 같은 맥락에서 법원이 가처분과 같은 형태로 사전에 긴급하게 피의자(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면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인격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보도금지의 신청권을 갖겠지만, 그가 사전에 보도가 예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의 신청을 강제적 요건으로 설정한다면 사실상 법원의 심사 대상으로 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인이 스스로 법원에 보도의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언론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까지 보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제3자의 심사를 받는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면, 언론인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처음부터 불필요한 공개보도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신속한 보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사전절차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절차가 자리 잡는다면

42) 이 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따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심리하는 것이어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언론인의 윤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경쟁 보도로 인한 부작용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언론인이 ‘피해자 등’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 그 동의가 없는 한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금지되지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실체적 요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절차적 요건)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에 이렇게 엄격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도대상자의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충돌하는 이익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V. 결어

범죄사건 보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항상 보도대상자의 기본권(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과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두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범죄사건 보도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대상자의 식별정보가 알려질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원칙적으로 언론인은 가명이나 모자이크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특히 피의자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경우에 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보도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경우까지 피의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의 핵심요소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충돌하는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익형량을 하여 보도가 허용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과 달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피해아동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없거나 피해아동이 그 보도에 동의하는 경우이면서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경우가 그 실체적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⁴³⁾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언론인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언론인이 민감한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⁴⁴⁾

피해아동의 실제 범익침해 가능성, 피해아동의 의사, 아동학대행위자의 인격권, 개별 사례에 따른 이익형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라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에 중점을 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보도대상자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쟁점화 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글을 통해서 이 난제(難題)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43) 같은 형태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 제2항(각주 10) 참조)도 개정해야 한다.

44) 물론, 이러한 절차적 요건은 아동학대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를 보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제3의 기관을 통한 심사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주체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서영 (202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 헌법재판연구원.
- 권태상 (2020).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6권 2호, 43-79.
- 김송옥·이인호 (2022). 익명보도의 원칙의 관례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 21권 2호, 1-46.
- 김하열 (2023). <헌법강의>. 서울: 박영사.
- 김혁돈 (2022). 언론의 범죄보도와 공정한 형사절차에 대한 소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권 3호, 175-202.
- 류영재 (2018).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미디어와 인격권> 4권 1호, 125-173.
- 성낙인 (2023). <헌법학>. 파주: 법문사.
- 신상현 (2021). '도촬행위' 처벌규정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내용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70호, 80-117.
- 안수길 (2021). 수사사건 공개 법규를 둘러싼 독일의 해석론과 입법론. <외법논집> 45권 1호, 101-121.
- 이경렬 (2020). 언론의 범죄보도와 피의사실공표의 문제. <피해자학연구> 28권 3호, 59-91.
- 이수중 (2016).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2권 4호, 85-124.
- 이원상 (2019).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소고 - 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 <법학논총> 26집 3호, 207-234.
- 이진국 (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수용 (2021). <헌법학>. 파주: 법문사.
- 허 황 (2017).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얼굴등 신상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형사법적·헌법적 문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권 1호, 85-125.

- Berka, W., Heindl, L., Höhne, T. & Koukal, A. (2019). Mediengesetz Praxiskommentar, Wien: LexisNexi. (저자, Mg-Pk, 2019, § Rz. 로 인용)
- Branahl, U. (2019). Medienrecht. Eine Einführung, Wiesbaden: Springer.
- Dokalik, D. & Zemann, A. (Hrsg.) (2018). Österreichisches und internationales Urheberrecht, Wien: Manz. (Dokalik & Zemann, 2018, § E 로 인용)
- Fechner, F. (2021). Medienrecht, Tübingen: Mohr Siebeck. (Fechner, 2021, Kap. Rn. 로 인용)
- Frohner, N. & Haller, A. (2016). Mediengesetz (MedienG). samt wichtigen Nebengesetzen. Kurzkommentar, Wien: Manz. (Frohner & Haller, 2016, § Rz. 로 인용)
- Götting, H., Schertz, C. & Seitz, W. (Hrsg.). (2019). Handbuch Persönlichkeitsrecht. Presse- und Medienrecht, München: C.H.Beck. (저자, Hb-Pr, 2019, § Rn. 로 인용)
- Hillebrand, S. (2020) Medienberichterstattung über Strafverfahr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Berichterstattung über das Strafverfahren gegen Christian Wulff, Hamburg: Dr. Kovač.
- Krey, V. & Heinrich, M. (2019). Deutsches Strafverfahrensrecht. Studienbuch in systematisch-induktiver Darstellung, Stuttgart: Kohlhammer. (Krey & Heinrich, 2019, § 로 인용)
- Lindner, J. F. (2008). Der Schutz des Persönlichkeitsrechts des Beschuldigten im Ermittlungsverfahren – zum Verhältnis von Justiz und Medien aus grundrechtlicher Sicht -. StV 2008, 210-217.
- Nobel, P. & Weber, R. H. (2021). Medienrecht, Bern: Stämpfli.
- Roxin, C. & Schünemann, B. (2022). Strafverfahrensrecht. Ein Studienbuch, München: C.H.Beck. (Roxin & Schünemann, 2022, § Rn. 로 인용)

ABSTRAC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the Reporting of Identifying Information of Child Abusers

Shin, Sang-Hyun

Dr. jur., Research Fellow,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en criminal cases are reported, the “right to the personality of the subject of the report”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always conflict, and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that can harmoniously guarantee the two interests. Because of the nature of reporting criminal cases, if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f a suspect is known through the media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there would be a substantially large negative ripple effect. As such, in principle, journalists should convey that information using pseudonyms or mosaics. However, if superior public interest can be obtained through reporting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s because of reporting, the relative superiority of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ight to know should be recognized. Therefore, there must be an area where such reporting is permissible through the balance of competing interest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somewhat regrett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uring case 2021Hun-Ka4, declared that the challenged provision is constitutional, focusing only on the provision’s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secondary damage to child victims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actual damage to the child victim and their will, the child abusers right to personality, and the possibility of balancing competing interests in each situation.

Thus,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reporting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f child abuser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hallenged provision. This scenario is a case when there is a superior public interest, and simultaneously, there is no concern that the child victim's identity will be disclosed or the child victim will agree to the reporting. Furthermore, preparing a procedural device so that a third party (Press Arbitration Committee or the judiciary), not a journalist, can objectively review the existence of the above requirements before reporting is necessary.

Keywords: Identifying Information, Reporting on Criminal Cases, Right to Personality, Freedom of the Press, Right to Know,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논문투고일 2023. 2. 18. 논문수정일 2023. 3. 24. 게재확정일 2023. 4. 5.]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개념 분석과 국내·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해충돌의 개념을 언론윤리의 맥락에서 톺아보는 것이다. 국내·외 학술 논의에서 이해충돌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개념의 핵심요소는 무엇인지 살핀 후,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의 본질은 공중과 언론(인) 간의 관계, 신뢰에 있으며 실질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로 비치는 상황까지 포괄하여 이해해야 한다. 둘째, 이해충돌을 피하는 방식은 크게 특정 행위의 제한/금지과 특정 사항의 보고/공개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이해충돌에 처할 수 있는 주체는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있으며, 국내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인 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언론(인)이 공익의 관점에서 취재, 보도하고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적 이해는 크게 경제적 이해와 정치사회적 이해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론(인)의 이해충돌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눠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대다수는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 그리고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 관련 세부규정들이었다. 언론인의 이해충돌 관련 현행 법률인 자본시장법과 청탁금지법 역시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mkhufs@gmail.com

생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언론윤리 관련 법/윤리 규정은 경제적 이익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해충돌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공백인데,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국내 언론윤리강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언론(인)의 이해충돌 개념을 관계와 신뢰에 방점을 두는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 실질적 이해충돌 혹은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이해충돌 전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주제어: 언론윤리, 이해충돌, 이해상충, 윤리강령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1. 전문직 윤리로서의 이해충돌의 개념
 - 2. 언론(인)과 이해충돌
 - 3. 언론인의 이해충돌 관련 국내 현행 법률 규정
 - 4. 소결
- III.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분석: 방법론
- IV.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분석: 결과 및 논의
 - 1. 해외 언론윤리강령
 - 2. 국내 언론윤리강령
- V. 결론

I. 서론

2023년 1월 초, 기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에 있는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시금 불거진 언론 윤리 위반 사례에 언론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는 형국이다. 민형배 의원은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언론인¹⁾ 역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송창한, 2023.1.19.). 그런데 언론의 이해충돌 상황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경우가 많아 법적 규제보다는 윤리적인 판단과 도덕적 책임이 우선시된다는 주장도 있

1) 제출된 지 8년 만에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활발히 제기된 바 있으나, 언론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어왔다(정결진, 1999a).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이해충돌 방지는 언론윤리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 언론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Lipworth et. al., 2012). 특히 공적 결정이 사적 이해에 오염됨이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배정근, 2022.8.25.). 최근에 드러난 언론인들과 김만배 씨의 돈거래 사건들 때문에도 그 개념을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해충돌의 개념을 언론윤리의 맥락에서 훑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해충돌 개념의 핵심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모형에 근거해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규율하는 행위의 세부내용을 분류함으로써 현행 윤리강령들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해충돌 개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재의 이해에 보충되어야 할 부분은 없을지 판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국내·외 학술 논의에서 이해충돌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개념적 핵심요소는 무엇인지 살핀다. 제2장의 말미에는 언론의 이해충돌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형(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 모형에 근거해 이해충돌의 개념과 범위가 국내·외 언론윤리 강령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제3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를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전문직 윤리로서의 이해충돌의 개념

이해충돌은 법 윤리 분야에서 시작된 개념(Davis, 1982; Luebke, 1987)이며, 서구권에서 보다 발달한 개념이다(Tambini, 2013).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상황적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철학자 뤼브케(Luebke, 1987)는 해당 용어의 용법을 사용 맥락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분류했다: 사회학적(sociological) 맥락, 상업적(commercial) 맥락, 전문직/공공서비스(professional/public service) 맥락, 그리고 사법적(judicial) 맥락.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학적 맥락에서의 이해충돌은 ‘두 개 이상의 행위자와 목표가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매우 광범위하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Luebke, 1987). 상업적 맥락에서의 이해충돌은 ‘불충실(disloyalty)’을 핵심으로 하는데, 직원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다든가 회사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든가 회사 기밀 정보를 다른 업체에 팔아넘긴다든가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Luebke, 1987). 다음으로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서의 이해충돌은 어떤 사람이 개인 고객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든 또는 특정한 권한/책임을 지닌 공무원으로 활동하든 ‘신탁 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적용된다(Luebke, 1987). 마지막으로 사법적 맥락에서의 이해충돌은 법원이 법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의 요소(개인 투자, 가족 관계 등)가 있는 변호사, 판사, 증인 등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Luebke, 1987).

언론에서의 이해충돌은 이러한 4가지 맥락 중 셋째인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 해당한다.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서의 이해충돌 개념은 철학자 데이비스(Davis)의 개념정의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데이비스는 1982년에 출간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당시 법 윤리에서 통용되던 ‘이해충돌’의 개념정의를 비즈

니스 및 전문직 윤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Davis, 1993).

‘이해충돌’은 어떤 사람이 a) 다른 사람을 위해 판단력을 발휘해야 하는 관계에 있고 b) 그 관계에서 적절한 판단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될 수 있는 이익/이해(interest)를 가진 경우에 존재한다(Davis, 1982, p. 21).

여기서 ‘판단’이란 기계적인 규칙 적용 이상의 지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그 무언가를 의미하며, ‘이익/이해’란 해당 상황에서 유능한(competent)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특별한 영향, 충성심, 기타 관심사항 등을 의미한다(Davis, 1993).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이 개념 정의를 살펴보자. 고혈압 치료약을 처방해야 하는 의사가 가나다 제약회사의 주식 10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의사는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 의사는 a) 환자를 위해 병증을 완화/치료하는 데 가장 적절한 약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b) 가나다 제약회사의 대주주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가 환자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의사가 가나다 제약회사의 고혈압 약을 처방할 경우, 설사 그 약이 환자의 증상을 완화/치료하는 데 가장 적합한 약이라 판단하여 처방했다 할지라도, 만약 해당 환자가 의사가 가나다 제약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의사의 판단이 최선의 판단이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이후 환자-의사 관계의 붕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해충돌 개념에서의 ‘판단’이란 판단의 질(quality)이나 정확성(correctness)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trust)’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Luebke, 1987). 전문가가 제공하는 조언의 정확성에 관심이 있는 고객은 여러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아 판단하겠지만, 신뢰에 관심을 두는 고객이라면 평판과 약속(reputation and commitments)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Luebke, 1987). 가상의 사례에 대입하면,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나다 제약회사의 고혈압 약을 처방한 의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의 여부는 처방된 약이 실제로 증상치료에 효과적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환자가 ‘나의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해충돌을 경합하는 역할의 충돌로만 봐서도 안 되고 경합하는 이해의 충돌로만 봐서도 안 되는 이유다(Davis, 1993). 이해충돌은 ‘관계’와 ‘신뢰’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이해충돌은 결국 관계와 신뢰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면, 실질적/실제의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해충돌 혹은 이해충돌로 비치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앞선 가상의 사례에서 의사가 가나다 제약회사의 고혈압 약을 처방한 자신의 결정은 자신이 해당 제약회사의 대주주라는 것과는 무관하고 의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판단으로 환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한들, 판단의 순수성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평판, 약속, 신뢰, 그리고 관계의 문제인 이해충돌은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관계와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

한편, 알고서도 이해충돌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해충돌의 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Luebke, 1987). 연락이 끊어졌던 외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나다 제약회사의 주식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 예기치 않게 이해충돌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충돌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이다(Luebke, 1987).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해충돌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Luebke, 1987). 가령, 언론인의 경제적 이해충돌 상황은 강연료 액수를 공개하는 것으로 쉽게 해소가능하다(Lichtenberg, 1990).

결론적으로 뉘브케(Luebke, 1987)는 이해충돌은 ‘도덕적 유형(moral category)’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버나드 윌리엄스

(Bernard Williams)가 기술적(descriptive) 요소와 평가적(evaluative) 요소를 모두 지닌 ‘두꺼운 개념(thick concept)’²⁾이라 부른 것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충돌을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윤리적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상황을 이해충돌로 분류한다는 것은 (i) 그 사람의 활동을 (스스로 혹은 외부에 의해서) 제한할 중요한 이유가 있으며 (ii) 그 사람의 재정적, 상업적, 정치적 또는 가족 관계를 부분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Luebke, 1987, p. 66). 달리 말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다.

2. 언론(인)과 이해충돌

뉴스는,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빌리면 ‘신임 상품(credence good)’에 해당한다. 소비한 후에도 품질을 쉽게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사실이라고 믿는 신임’이 핵심인 상품이다(McManus, 1992). 따라서 언론에게 신뢰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본 자산인데, 언론의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해충돌의 문제이다(Lipworth et. al., 2012).

앞서 논의한 데이비스(Davis)의 개념정의를 적용해 보면, 언론인은 공중 일반에게 충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Lipworth et. al., 2012)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단력을 발휘하여 취재, 보도, 논평해야 하는데 그러한 판단에 저널리즘적 가치판단 이외의 것들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 전반을 언론의 이해충돌이라 규정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맥락에서 이해충돌의 사례를 논한 리히텐베르크(Lichtenberg, 1990)는 크게 두 가지 사례에 주목했다. 첫째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2) 가령 ‘빨강’은 기술적 개념이고 ‘나쁘다’는 평가적 개념인데,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진 개념을 ‘두꺼운 개념’이라 부른다. 두꺼운 개념의 유형으로는 미덕 개념(예: 용기), 행동 개념(예: 살인), 인식론적 개념(예: 독단적), 미적 개념(예: 화려함) 등이 있다.

언론인의 이해충돌이다. 이는 기자를 ‘깨끗한 석판(Tabula Rasa)’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기자는 모든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 열린 마음으로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자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해충돌로 비치는 부적절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기자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아 편향된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독자와 시청자가 기자가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편향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기자가 자신이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진실보도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기자의 정치적 견해가 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면 이는 저널리즘의 신뢰성 훼손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해충돌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리히텐베르크(Lichtenberg, 1990)가 주목한 두 번째 유형은 소위 돈이 갖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다. 가령 언론인이 특정 이익 집단으로부터 고액의 강연료를 받고 외부 강연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예시를 통해 리히텐베르크가 강조하는바 역시 이해충돌을 ‘관계’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고액의 강연료를 받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이유는 언론인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전문 언론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관계의 존재(the existence of a relationship)’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히텐베르크(Lichtenberg, 1990)는 우리가 이해충돌에 취약한 이유는 우리의 악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덕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가령 돈을 받고도 돈을 준 사람을 물어뜯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다면 그의 ‘전문성’을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적은 언론인이 사익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상황에서만 이해충돌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작은 호의를 받아들인 후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추후 이해충돌 상황,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단력을 발휘해 취재, 보도해야 하는 의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업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는 고액의 강연료 수수처럼 기자가 직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얻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령, 립워스(Lipworth)와 동료들(2012)은 건강 관련 보도를 할 때 상업적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이해충돌 상황을 제시했다. 하나는 제약회사나 생명공학회사에서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때 정보 제공은 보도자료나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기자를 ‘접대’하는 경우다. 건강을 주제로 하는 학회 등 관련 행사에 기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비용을 낸다던가, 기자에게 관련 분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업계가 부담한다던가, 헬스 저널리즘 분야의 기자상을 기업이 후원한다던가, 유관분야 전문잡지에 기자가 글을 쓰도록 하고 원고료를 기업이 후원하는 형태 등 여러 유형의 접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들이 기자 개인의 행동 측면에서 이해충돌의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언론의 이해충돌 개념을 언론사 조직, 언론 기관의 이해충돌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주동황, 1999; 배정근, 2022.8.25.; Davis & Craft, 2000; Richards, 2004). 미디어 대기업(media conglomerate)의 성장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관의 이해충돌(institutional 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며(Davis & Craft, 2000), 이해충돌의 양상은 ‘공익에 복무하고자 하는 기자 개인의 역할’과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 기업/고용주’ 간의 내재적(inherent) 갈등에서 기인한다(Richards, 2004)는 것이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통해 협찬을 받는 경우, 신문사가 광고성 기사를 써 광고수주를 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권에 개입하거나 회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입김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이해충돌 맥락에서의 비리부패로 바라보는 것이다(주동황, 1999). 인터넷 언론사들이 상업적 이익에 골몰하여 이용자 클릭수를 노리는 기사를 다수 생산하고,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기관들에 우호적인 기사를 생산하거나, 기사에서 하이퍼링크 형식으로 연결되는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 등은 온라인 저널리즘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이해상충의 양상이라는 지적(이은택, 2006) 역시 기자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 차원에서 이해충돌을 바라보는 접근법이다.

온라인 행동주의(activism)의 부상, 언론인들이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여러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할 것이 기대되는 디지털 환경 등은 이해충돌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Laor, T. & Galily, Y., 2020).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나 각종 활동에 대한 취재보도를 하는 경우나 취재원과 상거래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흥미도가 높지 않은 기사를 기자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언론인 자신을 위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경우도 이해상충의 사례라 보는 입장(정결진, 1999a)도 있다.

국내에서 언론(인)의 이해충돌 문제가 전문(학술)지를 통해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999년으로 당시 중앙일보 경제부 차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가 구속되었고 KBS 제작본부 차장이 주식투자 클럽을 차려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사례, 동아일보 주필이 과거 경제 차장·부장 시절에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를 여러 차례 사고 판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문제적 행위들을 언론윤리 관점에서 논한 것이었다(주동황, 1999; 정결진, 1999a; 정결진, 1999b). 이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들의 정계 진출이 잇따르면서 권언유착의 문제가 함께 이해상충이 논의되기도 했다(장행훈, 2004). 모두 언론분야 전문지인 <관훈저널>과 <저널리즘 비평>을 통해 이뤄진 논의로 논평 성격이 강한데, 당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온 사례들에서 출발해 해당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살피거나 해당 사례와 유사한 사례, 사회역사

적 맥락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국내 언론윤리 규정 관련 학술 연구들(구교태·조소영·이영희, 2022; 조소영, 2022; 배정근·유승현·오현경, 2019)은 현행 언론윤리규정을 조사, 분석하거나 윤리강령 제정 실태와 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로 ‘이해충돌’의 개념이나 관련 규정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다. 다만 조소영(2022)은 개별 언론사 윤리강령의 내용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그 중 하나인 ‘직업윤리’의 세부내용으로 i)이해충돌의 배제, ii)금품·향응·편의 거부 iii)취재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포함시켰다.

3. 언론인의 이해충돌 관련 국내 현행 법률 규정

언론인의 이해충돌 관련 현행 법률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있다. 모두 언론인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중요한 정보를 업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이(단,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이) 경과된 정보’, 「방송법」에 의한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때로부터 6시간이 경과된 정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때부터 6시간이 경

과된 정보' 등이다. 달리 말해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상파방송, 연합 뉴스 등에서 보도하기 이전이거나 보도된 지 6시간이 지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특정 증권거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 전술한 중앙일보 경제부 차장 사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³⁾ 언론인이 사법당국에 구속된 첫 사례였다(주동황, 1999). 또한, 금융감독원은 '내부자 거래금지'의 대상을 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취재과정에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자는 정보수령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회사 내부자와 마찬가지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주동황, 1999).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이며,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내용으로 보도해달라거나 부정적 내용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은 청탁금지법이 열거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다(안재형, 2016). 언론 관련 대표 사례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TF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면, ①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고, ②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공식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 제공은 허용되며, ③경연을 통한 포상이라면 언론인이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외부 단체로부터 수상을 하여 상장과 더불어 상금 등을 받는 경우와 ④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에 따른 대상자 선발이라면

3) 당시에 적용된 법률은 「증권거래법」이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본래 증권거래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법으로 대체되면서 2007년 8월 3일 타법 폐지되었다.

사기업이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언론재단으로부터 기자가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도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용된다(안재형, 2016).

한편,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이원상, 2020)되었으나, 이해충돌 규정을 담은 개별 법률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직원을 제외한 언론인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⁴⁾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을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제2조 4항)있으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크게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행위’로 나누고 각각 5가지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⁵⁾

4.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언론 직업윤리로서 이해충돌 개념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의 본질은 공중과 언론(인) 간의 관계, 신뢰에 있다. 뤼브케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는 4가지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언론에서의 이해충돌은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언론(인)은 공중 일반에게 충성하는 일종의 ‘신탁 관계’에 있으며, 언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단력을 발휘하여 취재, 보도, 논평해야 한다. 여기서 적절한 ‘판단’을 한다는 것

4) KBS와 EBS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포함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5) 신고·제출 의무가 있는 5가지 행위는 ①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④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이다. 제한·금지행위 5가지는 ①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가족 채용 제한 ③수의 계약 체결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이다.

의 의미는 판단의 질이나 정확성 여부가 아니라 공중이 언론(인)이 내린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 즉 언론(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방해받지 않고 신탁 관계에 있는 공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을 내렸다고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의 문제이다.

둘째, 이해충돌은 실질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로 비치는 상황까지 포괄한다. 이는 이해충돌의 본질이 관계와 신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전술한 사례에서 보듯, 가나다 제약회사의 고혈압 약을 처방한 의사가 아무리 전문성에 근거하여 해당 약을 처방했고 그 약이 실제로 환자의 병증을 완화/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도, 해당 의사가 가나다 제약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실 자체, 즉 이해충돌의 가능성 혹은 이해충돌로 비치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환자-의사간의 관계와 신뢰는, 실질적 이해충돌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해충돌을 피하는 방식은 크게 특정 행위의 제한/금지과 특정 사항의 보고/공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가령 언론인의 정치 참여 금지가 그러하다. 한편, 뤼브케의 지적처럼 현실에서 예기치 않게 이해충돌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해충돌의 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보고/공개하고 편집자/독자로부터 이해를 구하면 된다.

넷째, 이해충돌에 처할 수 있는 주체는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언론사(기관/조직) 차원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초기의 이해충돌 관련 논의 특히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서 출발한 이해충돌의 개념 정의는 기자 개인을 주체로 둔 것이었다. 미디어 대기업의 성장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상업적 이익을 추구해야만 존속할 수 있다는 언론기업/고용주의 본질적 속성 등이 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언론사(기관/조직) 역시 이해충돌에 처할 수 있는 주체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언론(인)이 공익의 관점에서 취재, 보도하고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적 이해는 크게 경제적 이해와 정치사회적 이해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보도에 미치는 영향, 저널리즘 원칙의 훼손,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 궁극적인 폐해이지만, 경제적 이해로 인한 이해충돌은 언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예: 뇌물,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 차익) 자체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차이가 있다.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자본시장법이나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은, 가령 기자가 특정 정당이나 대의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취재/보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자를 ‘깨끗한 석판’에 비유하는 관점 즉 기자가 모든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열린 마음으로 취재, 보도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해, 1)이해충돌에 처할 수 있는 주체를 세로축으로 하고 2)각 주체의 사적 이해의 유형을 가로축으로 하여 이해충돌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그림 1>의 모형을 도출했다. 각 유형 내에서는 이해충돌을 피하는 방식에 따라 칸을 나눴고, 각 유형에 붙인 번호는 편의상 붙인 일련번호다.

<그림 1> 언론(인)과 이해충돌: 유형 분류

사적 이해의 주체	경제적 이해		정치사회적 이해	
	기자 개인	유형1 기자 개인-경제적 이해 충돌		유형2 기자 개인-정치사회적 이해 충돌
제한/금지		보고/공개	제한/금지	보고/공개
언론사	유형3 언론사-경제적 이해 충돌		유형4 언론사-정치사회적 이해 충돌	
	제한/금지	보고/공개	제한/금지	보고/공개

제2장에서 소개한 문헌의 이해충돌 사례들을 이 분류 모형에 따라 살펴보면, ‘기자 개인-경제적 이해 충돌’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①기자가 고액의 강연료를 받고 외부 강연을 하는 것(Lichtenberg, 1990), ②상업적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Lipworth et. al, 2012), ③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와 같이 기자가 취재 중에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것, ④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금지 등이 있다. ‘기자 개인-정치사회적 이해 충돌’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①기자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Lichtenberg, 1990), ②언론인이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정치사회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것(Laor, T. & Galily, Y., 2020) ③언론인의 정계진출(장행훈, 2004) 등이 있다. ‘언론사-경제적 이해 충돌’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①방송사가 협찬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신문사가 광고성 기사를 써 광고수주를 하는 것(주동황, 1999), ②인터넷 언론사들이 클릭수를 위한 기사를 생산하고 기사 속 하이퍼링크를 통해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은택, 2006) 등이 있다. 한편, 기자 개인 혹은 언론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로 언급된 것들 중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것인지 혹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서술된 것도 있다. 기자가 가족이나 친지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취재보도를 하는 경우(정결진, 1999a)와 언론사가 회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입김을 행사하는 경우(주동황, 1999)가 그러하다.

다음으로는 전술한 이해충돌 개념의 핵심 내용과 <그림 1>의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외 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규율하는 행위의 세부내용을 각 유형별로 파악함으로써, 현행 언론윤리강령들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해충돌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재의 이해에 보충되어야 할 부분은 없을 지 판단해 보고자 한다.

Ⅲ.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분석: 방법론

언론윤리 강령은 언론 관련 단체에서 제정한 규정과 개별 언론사들이 제정한 규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윤리강령 검토를 위해 각 국가/지역의 대표적인 언론 관련 단체에서 제정한 규정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인 분석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디아스캄포(Díaz-Campo)와 세가도보이(Segado-Boj)의 연구(2015)에서 사용한 방법을 활용했다. 탐페레 대학(University of Tampere) 저널리즘 학과에서 운영하는 EthicNet⁶⁾과 레이놀즈 저널리즘 연구소(Donald W. Reynolds Journalism Institute)의 웹 사이트⁷⁾는 전 세계 윤리강령의 영어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두 사이트에서 취합·제공하는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 언론인단체들이 제정한 언론윤리강령 2개와 7개 국가의 대표적인 언론 단체가 제정한 윤리강령들(독일 1개, 미국 1개, 영국 2개, 일본 3개, 캐나다 1개, 프랑스 4개, 호주 2개)의 영어번역본을 수집했다. 그런 다음 ‘conflict’, ‘interest’ 각각을 열쇳말로 검색해 각 언론윤리강령 본문에 ‘conflict’ 혹은 ‘interest’가 포함된 부분을 찾은 후, 해당 부분의 내용을 검토해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했다. 이 과정을 거쳐 이해충돌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윤리강령은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4개의 강령 중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포함된 윤리강령은 1개뿐이었고 일본의 윤리강령 3개는 어느 것에도 이해충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담겨있지 않았다.

국내 언론 관련 단체들이 제정한 규정과 준칙 등은 25여 개 정도가 있는데(배정근 등, 2019), 본 연구는 이 중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의 <한국기자협회 윤리

6) 해당 URL은 다음과 같다: <https://research.tuni.fi/ethicnet/country/> 그리고 <https://research.tuni.fi/ethicnet/about/international-principles/>

7) 해당 URL은 다음과 같다: <https://accountablejournalism.org/ethics-codes>

강령》 및 〈실천요강〉,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심의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⁸⁾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57년에 제정된 〈신문윤리강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윤리강령이고, 〈신문윤리강령〉에 바탕을 둔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 역사성도 있지만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하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술한 레이놀즈 저널리즘 연구소(Donald W. Reynolds Journalism Institute)에서 한국의 대표적 윤리강령으로 소개한 2개의 윤리강령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하지 않은 언론사가 준용하는 대표적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이다.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키로 서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분석대상에 추가했다.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된 국내·외 윤리강령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국내·외 윤리강령

지역/국가	윤리강령 명칭
한국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심의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

8)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http://www.ikpec.or.kr/sub/sub_0101.asp)을 기준으로 검토했고 이 중 실천요강은 2021년 4월 6일에 부분 개정된 내용이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은 개정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기자협회 사이트(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4)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기존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은 2019년 12월 26일에 전면 개정되면서 ‘기사심의 윤리강령’과 ‘광고심의 윤리강령’으로 분리, 제정되었다. 윤리강령시행세칙은 각각의 ‘기사심의규정’과 ‘광고심의규정’으로 분리되었다. 본 연구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광고심의 윤리강령〉과 〈광고심의규정〉은 제외하고 〈기사심의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지역/국가	윤리강령 명칭
국제	〈International Principles of Professional Ethics in Journalism〉*
독일	〈German Press Code〉
미국	〈SPJ(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Code of Ethics〉
영국	〈Editors' Code of Practice〉
캐나다	〈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 Principles for Ethical Journalism〉, 〈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 Ethics Guidelines〉
프랑스	〈Code of Ethics of Radio France Internationale〉
호주	〈Australian Journalists' Association Code of Ethics 1994〉(이하, 호주 A**)
	〈Australian Journalists Code of Ethics〉(이하, 호주B**)
<p>* 복수의 국제 언론인단체들(국제기자연맹, 라틴아메리카기자연맹, 아랍기자연맹, 아프리카기자연맹, 아세안기자연맹 등 포함)이 연합하여 제정한 강령이다.</p> <p>** 이후 본문 서술에서 2개의 윤리강령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호주A, 호주B로 표기한다.</p>	

IV.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분석: 결과 및 논의

1. 해외 언론윤리강령

(1) 개요 및 특징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언론 윤리 강령을 제외하고 최종분석대상에 포함된 해외윤리강령의 숫자는 총 9개였다.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언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캐나다와 같이 개별 항목 소제목(subheading)으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한 곳에 모아 서술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경우들은 ‘이해충돌’이라는 소제목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고 상위 항목(category)의 세부 내용에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항목은 다양했다. 우선 국제 언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정한 윤리강령(이하, 국제윤리강령)에서는 이해충돌을 ‘언론인의 직업적 청렴성(The journalist’s professional integrity)’의 세부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직업에 대한 존중(Respect for the profession)’에 이해충돌 규정을 포함시킨 프랑스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반면, 미국은 이해충돌을 ‘독립성 유지 원칙(Act Independently)’의 하부개념으로 보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는 맥락에서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언론윤리강령에서 이해충돌 관련 규정은 ‘광고와 편집콘텐츠의 분리(Separation of advertising and editorial content)’에 포함되어 있고, 영국의 언론윤리규정에서는 ‘금융/재무 저널리즘(Financial journalism)’ 항목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윤리강령 실천요강이라 볼 수 있는 <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 Ethics Guidelines>에서는 이해충돌을 개별 항목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규정을 서술하고 있는 동시에 몇 가지 다른 조항들은 ‘독립성’ 원칙에서 서술하고 있고, 기본 원칙을 천명한 윤리강령 자체라 볼 수 있는 <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 Principals for Ethical Journalism>에서는 ‘정확성과 공정성 추구 원칙(We strive for accuracy and fairness)’의 일부로 ‘이해충돌을 공개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윤리강령(호주A, 호주B)에 포함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서 구성하지 않고 각 윤리원칙에 대한 선언을 번호를 매겨 제시하고 있어 상위 항목으로 개념 분류가 불가능했다.

종합하면, 해외 윤리강령들에서 이해충돌의 개념은 직업적 청렴성, 독립성, 경제적 이해충돌 회피, 정확성, 공정성 등 다양한 개념들과 연관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이는 이해충돌이 언론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저널리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실재하는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명시적 언급을 둔 언론윤리강령

은 미국과 호주(호주B)였다. 또한, ‘이해충돌을 공개한다’는 일반 규정을 포함한 국가는 미국, 호주(호주B), 캐나다였다.

(2) 이해충돌 유형별 세부 규정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규율하는 행위의 세부내용을 앞서 <그림 1>로 정리한 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살펴본다. 충돌하는 사익이 경제적 이익인지 정치사회적 이익인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서술한 경우 등은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포함시킬 수 없어 유형별 논의에 앞서 여기서 언급한다.

먼저, 기자를 주체로 두고 있으나 사적 이익의 유형을 구체화하지 않거나 추상적 수준에서 대원칙을 서술한 대표적 예는 ‘기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공복지(general welfare)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서술한 국제윤리강령 규정과 ‘광고주, 기부자, 또는 기타 특별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를 거부하고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것’을 규정한 미국 규정 등이 있다. 호주⁹⁾와 캐나다¹⁰⁾ 역시 유사한 내용의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언론사를 주체로 두고 있으나 이익의 유형을 구체화하지 않은 규정은 독일의 윤리강령에서 나타나는데 “언론사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이를 명확히 식별

9) 호주의 윤리강령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언론인의 직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말라(Do not improperly use a journalistic position for personal gain)”(호주B), “직무수행에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Not to allow his personal interests to influence him in the discharge of his duties)”(호주A)고 규정하고 있다.

10) 기자를 주체로 둔 캐나다의 포괄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이는 때때로 광고주, 정부, 취재원 등 다양한 공공 및 사적 이해관계자의 바람과 상충될 수 있으며, 때로는 고용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도 상충될 수 있다.(We serve democracy and the public interest by reporting the truth. This sometimes conflicts with the wishes of various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cluding advertisers, governments, news sources and, on occasion, with our duty and obligation to an employer.)”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와 “제3자의 사적 혹은 경제적 이익에 의해 편집 콘텐츠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가) 기자 개인-경제적 이해충돌

기자 개인-경제적 이해충돌 유형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기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규정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제윤리강령은 언론인이 어떤 형태의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윤리강령도 마찬가지다. ‘선물, 접대, 비용지불, 무료 여행, 특별대우 등을 거부해야 한다’는 대동소이한 규정이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호주B), 캐나다의 윤리강령에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세세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요청하지 않은 선물이 명목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반환한다. 선물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자선단체나 기관에 기부한다”,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지 않는다”,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상업적 거래를 통해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얻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취재비용 지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세부규정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윤리규정은, 무료여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기자 직무 수행에 필요하고 그 사건/행사가 보도될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이며, ‘허용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윤리규정은 ‘영화 시사회 및 연극 공연의 경우 평론가에게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허용된다,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좁은 범위에서 허용된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리뷰용으로 보낸 책, 음악, 또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규정 중에는 취재비용과 관련하여 전면 금지가 아니라 공개 의무를 서술한 조항도 있다. “다른 조직/단체가 사건/행사 취재비용을 지

불하는 경우 독자, 시청자 또는 청취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수나 사례금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둔 곳도 있다. 프랑스는 “행사에 참여하고 받는 보수나 행사의 성격 때문에 언론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캐나다는 “보도/논평의 대상인 그룹으로부터는 강연비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언론인을 부르는데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기업이 내각 장관이나 총리에게 접근하기 위해 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보일 것이라는 것이 금지의 이유로 설명되어 있다. 단, 행사참여 패널 모두가 사례금(honorarium)을 받는다면 그 사례금은 (수령하여) 자선단체나 가치 있는 일에 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기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규정 중 상당수는 경제 및 금융시장 보도와 관련되어 있다. 독일과 영국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세부내용은 사적 목적으로의 정보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작성 금지 등이다. 독일의 언론윤리강령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저널리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본인의 개인적 이익 또는 타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영국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공개(기사 출고) 이전에 자신이 받은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남에게 전달해서도 안 된다”면서 미공개 정보의 활용을 금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주간 보도했거나 향후 2주간 보도할 예정인 증권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해서는 안 된다”(독일), “최근에 글을 썼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글을 쓸 예정인 주식 또는 증권을 직접 또는 지명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해서는 안 된다”(영국)고 정하고 있다.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기사 작성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고 공개/보고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도 있다. “언론인과 언론사는 증권 가격변동을 통해 자신, 가족 또는 기타 가까운 사람에게 이익을 줄 의도로 해당 증권이나 그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기사를 발간해

서는 안 된다”(독일),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제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다”(캐나다)와 같은 규정은 관련 기사 작성 금지 규정이다. 공개/보고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으로는 “재무 분석을 작성하거나 전달할 때 이해 충돌이 있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밝혀야 한다”는 독일의 규정과 “자신 또는 가까운 가족이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이나 증권에 대해 기사를 작성할 때”는 에디터나 경제에디터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라고 정하고 있는 영국의 규정이 있다.

한편 기자가 경제적 이익의 수혜자가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하거나 이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도 있었다. 미국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말라’면서 기자가 직접적으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뷰, 사진, 정보 또는 기사에 대해 직·간접적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하라”(호주B)는 규정처럼 공개 의무를 강조한 경우도 있다.

(나) 기자 개인-정치사회적 이해충돌

기자 개인-정치사회적 이해충돌 유형에 해당하는 규정 역시 다수 존재한다. 미국은 “청렴성(integrity)이나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훼손하거나 신뢰성(credibility)을 손상시킬 수 있는 정치적 활동을 비롯한 여타 외부 활동을 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정부/지자체, 정당, 또는 특정 조직의 지도자들의 잘못(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묵인하거나 그러한 잘못에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캐나다이다. 전술한 것처럼 캐나다의 윤리강령은 ‘이해충돌’이라는 개별 소제목/섹션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소제목하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다수는 정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관련하여 캐나다의 윤리강령은 이러한 이해충돌 규정이 ‘언론사가 특정 이념과 대의(cause)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캐나

다의 전통'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언론이 지지하는 특정 이념과 대의는 독자, 청취자 또는 시청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인은 자신이 속한 언론이 지지하는 이념과 대의의 주창자(advocates) 역할을 하거나 주창자 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맥락에서 도출된 캐나다 언론윤리강령 이해충돌 방지 세부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공개가 아니라 제한/금지 규정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공적 선출 기관이나 이익단체에 대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논평할 수 있으려면 기자가 보도대상이 되는 그룹의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출직 공직을 맡거나, 정치 캠페인 담당자로 일하거나,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연설문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보도할 가능성이 있거나 편집 관련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커뮤니티 조직에서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기금 모금 또는 홍보업무, 그리고 공공 이슈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커뮤니티 조직 및 압력 단체에 적극적 참여 등 금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취업을 요청했거나 지원한 경우 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다” 등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나 직접적·적극적 참여를 금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선거 보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거 캠페인에 재정적 후원을 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청원에서 서명하지 않는다”처럼 소극적·간접적 참여 역시 금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 및 기타 공식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언뜻 보아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조사 등이 언론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편집국과 칼럼니스트, 또는 논평자는 정치후보자나 정치적 대의를 지지해도 되지만 기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역할과 논평을 제공하는 언론사 전체, 칼럼니스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다) 언론사-경제적 이해충돌

언론사-경제적 이해충돌 유형에 해당하는 규정은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가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 서술¹¹⁾을 제외하면 보고/공개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뉴스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은 미국과 독일의 윤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의 윤리강령이 세부 규정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 ‘뉴스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혼합 콘텐츠를 피할 것’, ‘협찬을 받아 제작한 콘텐츠(sponsored content)인 경우 이를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할 것’, ‘외부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료 제공이든 유료 제공이든 그 출처를 명시하라’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기자 개인-경제적 이해 충돌 유형에서 소개한 독일의 규정(“언론인과 언론사는 증권 가격변동을 통해 자신, 가족 또는 기타 가까운 사람에게 이익을 줄 의도로 해당 증권이나 그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기사를 발간해서는 안 된다”)은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언론사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 관련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언론사-정치사회적 이해충돌

전술한 “언론사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 이외에는 언론사-정치사회적 이해충돌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 규정은 찾기 어려웠다. 캐나다처럼 언론사가 특정 이념과 대의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전통이 있는 국가인 경우, 언론사 사설과 논평을 통해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11) 가령 프랑스는 “간접적으로라도 광고주의 업무와 유사한 일을 하지 않는다(Not doing anything that resembles, even indirectly, the job of an advertiser)”고 규정하고 있고, 호주(호주B)는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고려가 정확성,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Do not allow advertising or other commercial considerations to undermine accuracy, fairness or independence)”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언론사-정치사회적 이해충돌 유형으로 분류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이 된 해외윤리강령들이 언론인 단체들이 제정한 것이 다수이다 보니 언론사 차원, 기관 차원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에 방점을 찍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 이는 개별 언론사 차원의 윤리강령 분석을 통해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2. 국내 언론윤리강령

(1) 개요 및 특징

국내윤리강령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강령은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심의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 규정>이다. 이 중 ‘이해충돌’ 혹은 ‘이해상충’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강령과 심의규정이 유일하다. <기사심의 윤리강령> 제6조(이해의 상충)는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심의규정> 제3절(이해상충)은 3개의 조와 각 조별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절에 포함된 조항은 ‘언론인의 이해상충’(15조), ‘부당계제 및 전송 금지’(16조), 그리고 ‘기사와 광고의 분리’(17조)이다.

다른 윤리강령들은 ‘이해충돌(상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해외 윤리강령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충돌 관련 규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1조(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제3조(보도준칙), 제14조(정보의 부당이용금지), 제15조(언론인의 품위)에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4개 항목(3. 품위 유지, 4. 정당한 정보수집, 5. 올바른 정보사용,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에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3개 분야로 나뉘 서술되어 있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에서는 ‘2. 취재 및 보도’ 분야와 ‘3. 품위유지’ 분야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요약하면 국내윤리강령 역시 해외 윤리강령처럼 이해충돌의 개념을 다양한 맥락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해충돌을 공개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의 서술이나 ‘실재하는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명시적 언급은 국내 윤리강령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2) 이해충돌 유형별 세부 규정

국내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들 역시 <그림 1>의 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살펴본다. 국내 규정에서도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포함시킬 수 없는 포괄적 서술 규정이 발견되었는데,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의 정치권력이 언론에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신문윤리실천요강〉, 1조 1항), “(언론인은)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신문윤리실천요강〉, 1조 2항), 언론인은 “...이기적인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3조 1항), 언론인은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크기·배치 등을 바꿔서는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10조 2항),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2조 3항),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규정〉 제15조 3항) 등과 같이 기자 개인을 주체로 두고 있지만 매우 포괄

적인 선언의 형태를 띠거나 충돌하는 이익의 구체적 유형을 명시하지 않은 규정들과 함께,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정당·단체·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9조 1항)처럼 언론사를 주체로 두고 있지만 충돌하는 이익을 포괄적으로 서술한 규정이 있다.

한편 국내 윤리강령 규정 중에는 기자나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인 단체’를 이해충돌에 처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한 규정도 있다.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취재원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15조 1항)와 “회원은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3조 3항)는 규정이 그러한 내용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규정〉 제15조(언론인의 이해상충) 3항(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후문도 “또한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상정하는 이해충돌 상황은 이론적 논의와 해외윤리강령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내용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가) 기자 개인-경제적 이해충돌

기자 개인-경제적 이해충돌 유형에 해당하는 해외윤리강령의 세부내용은 ①기자가 뇌물, 선물, 접대, 비용지불, 무료 여행, 특별 대우 등의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규정; ②보수나 사례금에 대한 제한/금지 규정; ③경제 및 금융시장 관련 뉴스 취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규정; ④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경우 경제 및 금융시장 관련 기사 작성을 제한/금지하거나 관련 보고 의무를 명시한 규정; 그리고 ⑤기자가 취재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국내 윤리강령들은 해외윤리강령들처럼 구체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우선 ①과 ②에 해당하는 규정으로는 “(언론인은) 취재·보도·평론·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15조 1항(금품수수 및 향응, 청탁 금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항목 3.(품위유지)),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3조 1항),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기사심의규정〉 15조 5항(금품 수수 및 향응 요구 금지)) 등이 있다. 포괄적 수준에서 ‘금품, 향응, 특혜’ 등을 언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무료여행, 접대골프’처럼 예시가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해외 규정처럼 취재관련 비용에 대한 언급이나 예외규정, 외부활동 사례비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③과 ④에 관련된 규정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14조의 1항(소유 주식 등에 관한 보도 제한)¹²⁾과 2항(주식·부동산 등의 부당 거래 금지)¹³⁾,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규정〉 15조의 1항(사적이익 추구 금지)¹⁴⁾과 2항(주식 등 거래의 제한)¹⁵⁾처럼 경제보도와 경제적 이익에 국한하여 서술한 경우도 있지만,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올바른 정보사

12) “언론인 본인, 친인척 또는 이해 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전자화폐 등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13)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주식·부동산 거래 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14)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5)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를 다루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항목 5), “회원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3조 5항) 및 ‘정보의 부당 이용금지’(“언론인은 취재과정 등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14조)처럼 폭넓게 서술한 경우도 있다.

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국내 윤리강령 규정은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여타 비윤리적 방법(예; 위계, 강압 등)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으로 취재하거나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2조 6항),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항목 4(정당한 정보수집)),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2조 5항) 등의 내용이다. 언론인들이 취재과정에서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관심을 둔 해외 규정과 달리, 국내 규정들은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윤리강령 규정에는 언론인에게 광고·판매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사가 언론인에게 영업 활동을 요구해서도 안되고 언론인이 영업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외 윤리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사는 언론인에게 취재·편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광고·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인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15조 3항(광고·판매 등 영업행위 금지),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

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항목 10(광고·판매활동의 제한)), “회원은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3조 6항),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기사심의규정〉, 15조 4항),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인터넷신문 윤리강령〉, 15조 6항)는 규정 등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언론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언론인이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언론사-경제적 이해 충돌 유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언론인에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문윤리실천요강〉 10조 7항(기사와 광고의 구분)¹⁶⁾도 해외에서는 언론사가 경제적 이해로 인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으로만 규정된 내용이다.

(나) 기자 개인-정치사회적 이해충돌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국내 언론윤리강령 중에는 기자 개인-정치사회적 이해충돌 유형에 속하는 규정, 즉 기자 개인의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로 인해 저널리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하고 이를 제한/금지하거나 공개토록 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다만, 국내 언론윤리강령에는 앞서 제4장 제2절 (2)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해외윤리강령에서 미국, 프랑스, 캐나다가 기자 개인-정치사회적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캐나다가 매우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16) “언론인은...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광고를 기사와 같은 지면이나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언론사-경제적 이해충돌

앞서 기자 개인-경제적 이해충돌 유형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내 윤리강령 규정에는 언론인에게 광고·판매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 중에는 언론사가 언론인에게 영업 활동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15조 3항,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심의규정> 15조 4항과 6항이다.

특히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심의규정>에는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과 관련해, 제한/금지 혹은 보고/공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제한/금지 행위는 크게 광고 목적의 보도를 금하는 규정¹⁷⁾과 기사 부당게재 및 전송 금지 규정¹⁸⁾이 있다. 이 중 부당한 재전송 금지는 <신문윤리실천요강> 10조 9항¹⁹⁾에도 명시되어 있다. 기사의 부당게재와 부당한 재전송을 금지하는 이러한 규정들은 클릭수나 검색횟수를 기반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국의 온라인 저널리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보고/공개 관련 규정들도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규정> 17조 1항(기사와 광고의 구분)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

17)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규정> 17조 2항).

18) 제16조(부당게재 및 전송 금지) 1항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부당한 게재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2항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전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게재행위는 “1.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포함하는 행위, 2. 기사의 전체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행위, 3. 과거 기사를 그대로 또는 일부만 수정하여 보도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2항에서 금지한 ‘부당한 전송행위’는 “1. 사진, 제목, 본문, 색선 등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전송하는 행위, 2.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색선만을 변경하여 중복 전송하는 행위, 3.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일부만 수정해 중복 전송하는 행위, 4.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중복 전송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9)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고를 기사와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이용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조 3항(협찬명시)에서는 “네이티브광고, 브랜드드콘텐츠, 협찬기사 등 경제적 보상 또는 후원을 받아 작성한 기사나 콘텐츠는 일반보도 기사와 명백히 구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언론사-정치사회적 이해충돌

국내 언론윤리 강령 역시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해외 언론윤리 강령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언론사-정치사회적 이해충돌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다만, <신문윤리실천요강> 9조 1항은 “사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정당·단체·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때 ‘특정 정당·단체·종파의 이권’은 통상적인 의미의 ‘정치사회적 신념이나 대의’와는 구분되는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조 2항에서 “사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캐나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언론사가 사실 등 평론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다.

V. 결론

이해충돌의 개념을 언론윤리의 맥락에서 훑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 논의에서 이해충돌 개념의 핵심요소와 특징을 살핀 후, 이해충돌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모형(<그림 1> 참조)을 도출했다. 이 분석 모형에 따라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이해충돌 유형별 국내·외 윤리강령 요약

<p>기자 개인-경제적 이해 충돌 유형 관련 규정</p>	<p>해 외</p> <p>①기자가 뇌물, 선물, 접대, 비용지불, 무료 여행, 특별 대우 등의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금지, ②보수나 사례금 수령 제한/금지, ③경제 및 금융시장 관련 뉴스 취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금지, ④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경우 경제 및 금융시장 관련 기사 작성을 제한/금지하거나 관련 보고/공개 의무를 명시, ⑤취재정보를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 등</p>
	<p>국 내</p> <p>해외윤리강령들에서 규정한 것처럼 구체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해외윤리강령들에서 나타나는 위의 다섯 가지 내용 모두가 규정되어 있음. 다만 ⑤와 관련해 국내 규정은 여타 비윤리적 방법(예: 위계, 강압 등)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또한 언론인이 소속 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협찬 강요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로 발견됨</p>
<p>기자 개인-정치사회적 이해 충돌 유형 관련 규정</p>	<p>해 외</p> <p>포괄적 서술로 ①정치적 활동을 비롯한 여타 외부활동 금지 ②정부/지자체, 정당, 또는 특정 조직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그러한 잘못에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 형성 금지 등이 있음. 구체적 규정으로는 캐나다의 윤리강령에 명시된 것들로 ①보도 대상인 단체/조직의 회원으로 가입 금지, ②선출직 공직을 맡거나, 정치 캠페인 담당자로 일하거나, 정당/정치인을 위한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 금지, ③커뮤니티 조직의 기금 모금이나 홍보업무 등 직접적 참여 금지, ④선거 캠페인 재정 후원, 시위 참여, 청원 서명 등 금지, ⑤사법부의 조사 등 공적 조사에 참여 금지 등의 규정이 있음</p>
	<p>국 내</p> <p>해외윤리강령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은 없음. 다만,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서술(“정권, 정당 및 정파 등의 정치권력이 언론에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단체, 종파 등 사회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등)은 존재함</p>
<p>언론사-경제적 이해 충돌 유형 관련 규정</p>	<p>해 외</p> <p>포괄적 서술로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가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 구체적 규정은 ①뉴스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 원칙에 따른 세부 규정으로 (i)뉴스와</p>

	<p>광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콘텐츠 제시 금지, (ii)협찬 콘텐츠를 투명하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공개, (iii)외부에서 제공한 정보인 경우 무료 제공이든 유료 제공이든 출처를 명시 등이 있음. 또 다른 종류의 구체적 규정으로는 ②언론사가 증권 가격 변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기사를 발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p>
	<p>국내 ①기사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 및 명확한 광고 표시, ② 경제적 보상/후원을 받아 작성한 기사/콘텐츠에 협찬 명시 ③광고 목적의 보도 금지 ④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기사 부당개제 및 부당 재전송 금지 ⑤소속 기자에게 광고·판매 관련 활동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 등</p>
<p>언론사-정치사회적 이해 충돌 유형 관련 규정</p>	<p>해외 “언론사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포괄적 서술 이외에 구체적 규정은 없음</p>
	<p>국내 “사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정당 단체 종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 서술 이외에 구체적 규정은 없음</p>

본 연구의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 직업윤리에서 이해충돌은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서의 이해충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해의 핵심은 이해충돌은 ‘관계와 신뢰’의 문제라는 점이다. 언론(인)이 처하게 되는 다양한 이해충돌의 상황을 공익과 사익의 경합으로만 바라보거나 이해충돌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 인간의 악덕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납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이 이해충돌을 피한다는 것은 공중의 입장에서 공중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판단 즉 취재/보도해야 하는 언론(인)이 저널리즘 가치에 입각하여 적절한 판단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인간관계에 유의해야 한다는 포괄적 윤리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언론인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강연료를 받는 것, 언론인이 특정 정치인과 가깝게 지내는 것 등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이유는 언론인의 욕심이나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전문 언론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독자/시청자에게 비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적으로 공중과 언론(인) 간의 관계, 신뢰에 바탕을 둔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충돌은 관계와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제언은 현장 언론인들에게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것이다. 언론윤리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실에 적용할 때 확실한 준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언론인이 많다는 점(배정근 등, 2019)을 감안하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해충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된다고 해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적용을 낳을 뿐이다. 또한, 수많은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제시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해충돌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언론윤리 관련 교육과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 취재/보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해충돌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토론해야 한다. 각 취재/보도사례에 존재하는 혹은 잠재되어 있는 사적 이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만약 일반 공중/독자/시청자가 해당 사적 이해에 대해 알게 된다면 언론(인)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 언론윤리강령에서 이해충돌 관련 규정들은 다양한 상위 가치 개념들에 걸쳐, 즉 하나의 공통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러 유형의 상황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이해충돌이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제시한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에 해당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비트겐슈타인은 ‘놀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묶을 수 있지만 모든 놀이 활동에 공통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놀이 활동들 간에는 가족들이 공유하는 것과 같은 유사성²⁰⁾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해충돌로 간주되는 여러 상황들 역시 단일한 공통 속성을 지니

고 있기보다는 서로 닮아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이해충돌의 개념을 앞선 논의와 연계하여 이해하면, 촘촘한 세부 행동지침도 필요하지만 이해충돌 개념의 핵심을 ‘관계’의 문제로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충돌(실질적 이해충돌 혹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내 언론윤리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 대다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에 속하는 규정들이었다. 국내 언론윤리강령에서는 충돌하는 이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서술한 규정,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처럼 정치사회세력이 언론에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을 뿐, 절대 다수의 규정은 기자 개인의 그리고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 세부규정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해외 언론윤리강령이 기자 개인의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²¹⁾

20) 가령, 엄마는 A, B의 속성을 딸은 B, C의 속성을 아빠는 C, D의 속성을 가졌을 때 세 사람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단일 속성은 없지만 셋은 서로 닮아있다.

21) 국내 언론윤리강령 규정의 절대 다수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유형에 관한 내용인 환경적, 구조적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내 언론윤리강령에서 언론의 자유 특히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핵심가치로 다루어지고 있다. 배정근 등의 연구(2019)에 따르면 국내의 언론윤리 규정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1원칙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윤리규정에 포함시키는 대신 취재의 투명성과 언론의 책무성을 주요 원칙으로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1원칙으로 내세운 언론윤리강령이 마련되었고, 이후 개정용을 거치면서도 그러한 기초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 탄압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차원에 방점을 두고 언론윤리규정을 개념화하다 보니, 해외 언론윤리규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기자 개인의 정치사회적 신념과 관련한 외부활동이 야기시킬 수 있는 이해충돌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내에서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듯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소위 ‘폴리너리스트’로 지칭되는 언론인들의 정계 진출이 빈번하고, 언론(인)이 자발적으로 정치세력과 결탁해 편향된 보도를 한다는 대중의 의구심이 팽배한 작금의

아울러 언론인의 이해충돌 관련 국내 현행 법률인 자본시장법과 청탁 금지법은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이다. 결국 국내는 법 규정과 언론윤리 규정 모두 경제적 이익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공백이다.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앞서 〈그림 1〉의 모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적 이해충돌의 경우 기사가 획득한 경제적 이익 자체도 금지의 대상이며 경제적 이익의 존재 유무는 법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반면,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한 이해충돌, 가령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며 회비를 납부해 온 기사가 해당 여성단체 관련 보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과연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정치사회적 이해관계가 불공정한 보도로 이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유형은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이 어려운 영역이므로 더욱 언론윤리를 통해 언론(인)의 정치사회적 이해충돌과 언론의 신뢰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공중/독자/시청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때 기자의 저널리즘적 가치 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짓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리히텐베르크(Lichtenberg)는 기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기사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아 편향된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기보다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아이러니하다. 언론(인)은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원치 않는 형태의 정치적 압력은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정치적 ‘결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

는 독자와 시청자가 기자가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편향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인이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정치사회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 요구되는 디지털 환경 역시 언론인의 정치사회적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윤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짚는다. 우선, 대표적인 언론 유관 단체가 제정한 윤리강령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가령, 이 연구에서 ‘영국의 윤리강령’이라고 지칭한 윤리강령은, EthicNet과 레이놀즈 저널리즘 연구소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국 대표 언론 단체의 윤리강령이므로 영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접근 방식을 정확히 보여준다거나 혹은 영국의 개별 언론사(예:BBC)가 이해충돌 규정을 분류하고 있는 체계와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원어로 작성된 윤리규정이 아니라 영어번역본을 참고했으므로 번역에서 발생하는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개별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분석했다라면 이번 분석에서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 가령 언론사-정치사회적 이해 충돌 유형에 해당하는 세부규정 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구교태·조소영·이영희 (2022). <국내 언론사 윤리강령 제정 실태 및 보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정연구 2022-05).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민권익위원회 (2022).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서울: 국민권익위원회.
- 문철수 (2020). 조국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 언론의 보도 분석: 중앙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9(1), 281-327.
- 배정근·유승현·오현경 (2019). <언론윤리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비트겐슈타인/이영철 역 (1969/1994). <철학적 탐구>. 서울: 서광사
- 안재형 (2016). [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연구. <방송문화>, 2016(12), 208-225.
- 이원상 (2020). 현행 청탁금지법의 평가와 개선점 고찰. <법학논총>, 33(2), 111-143.
- 이은택 (2006).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연구: 기존의 저널리즘 윤리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이론>, 2(2), 74-103.
- 장행훈 (2004). 언론인의 정계진출, 왜 문제인가? <관훈저널>, 45(1), 132-140.
- 정결진 (1999a). 언론인의 윤리의식과 이해상충. <관훈저널>, 1999.9, 200-209.
- 정결진 (1999b). 언론인의 윤리의식과 이해상충. <저널리즘 비평>, 1999.9, 86-89.
- 조소영 (2022). 개별 언론사 윤리강령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검토. <언론과 법>, 21(3), 49-92.
- 주동황 (1999). 언론인 주식투자와 언론윤리. <관훈저널>, 1999.9, 210-219.
- 김형준 (2020.1.28). [리걸인사이트] 청탁금지법, 누가 받으면 위반인가. <연합인포맥스>, URL: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523>
- 미디어오늘(2000.1.13.). 언론사 주식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4>
- 배정근 (2022.8.25.). ‘대통령님, 파이팅’과 이해충돌 방지. <언론윤리TALK>, 15, URL: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2074
- 송창한 (2023.1.19.). 김남배 돈거래 파문에 ‘언론인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돼. <미디어스>, URL: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

tml?idxno=303384

- Davis, C. & Craft, S. (2000). New Media Synergy: Emergence of Institutional Conflicts of Interest.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5(4), 219-231.
- Davis, M. (1982). Conflict of Interest. *Business & Professional Ethics Journal* 1, 17-27.
- Davis, M. (1993). Conflict of Interest Revisited. *Business & Professional Ethics Journal* 12(4), 21-41.
- Díaz-Campo, J. & Segado-Boj, F. (2015). Journalism ethics in a digital environment: How journalistic codes of ethics have been adapted to the Internet and ICT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elematics and Informatics* 32, 735-744.
- Ki, E-J., Choi, H-L., & Lee, J. (2012). Does Ethics Statement of a Public Relations Firm Make a Difference? Yes it Do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5(2), 267-276.
- Laor, T. & Galily, Y. (2020). Offline VS online: Attitude and behavior of journalists in social media era. *Technology in Society* 61, 101239.
- Lichtenberg, J. (1990). Truth, Neutrality, and Conflict of Interest. *Business & Professional Ethics Journal* 9(1/2), 65-78.
- Lipworth, W., Kerridge, I., Sweet, M., Jordens, C., Bonfiglioli, C. & Forsyth, R. (2012). Widening the debate about conflict of interest: addressing relationships between journalists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Journal of Medical Ethics* 38(8), 492-495.
- Luebke, N. R. (1987). Conflict Of Interest as a Moral Category. *Business & Professional Ethics Journal* 6(1), 66-81.
- McManus, J. (1992). Serving the Public and Serving the Market: A Conflict of Interest?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7(4), 196-208.
- Richards, I. (2004). Stakeholders Versus Shareholders: Journalism, Business, and Ethic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9(2), 119-129.
- Tambini, D. (2013). Financial Journalism, Conflicts of Interest and Ethics: A Case Study of Hong Kong.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8(1), 15-29.

■ ABSTRACT

Journalism ethics and conflict of interest

- A conceptual analysis and a review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des of ethics -

Minjeong Kim

Ph.D., Professor, Divis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context of journalism ethics by determining how conflicts of interest are conceptualiz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ademic discussions and what the key elements of the concept are and analyz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ovision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journalism cod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ssence of conflicts of interest lies in the relationship and trust between the public and the media, which should be understood during actual conflicts or situations appearing as conflicts of interest. Second, ways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are either limiting or prohibiting certain actions or reporting or disclosing certain matters. Third, media outlets, aside from individual journalists are subject to conflicts of interest. In addition, Korean code of journalism ethics states the associations of journalists may be subject to conflicts of interests. Fourth and last, private interests that interfere with journalists' ability to investigate and report from the public interest perspective and fulfill their journalistic duti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economic and sociopolitical interests. In this study,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des of journalistic ethics were compared by

classifying the types of conflicts of interest of journalists into four categories and found that most of the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s in national codes of journalistic ethics are detail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conomic interests of individual journalists and situations where conflicts of interest arise because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media organization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laws on journalists' conflicts of interest—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also restrict or prohibit a range of behaviors arising from a journalist's economic interests, it can be seen that both Korean code of journalism ethics and Korean laws focus on issues arising from the pursuit of economic interests and specify conflicts of interest, a gap that needs to be addressed given the constant criticism of the partisanship of the Korean media. In addi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dding detailed regulations on the types of conflicts of interest arising from political and social interests to the Korean media ethics regulations. Thus,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in journalism should be understood in a professional or public service context that focuses on relationships and trust. Efforts should be made to avoid actual or perceived conflicts of interest in various situational contexts.

Keywords: Media Ethics, Conflict of Interest, Code of Ethics

[논문투고일 2023. 3. 5. 논문수정일 2023. 4. 3. 게재확정일 2023. 4. 5.]

미디어와 인격권 관련 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5. 4. 17.
개정 2016. 10. 10.
개정 2017. 2. 3.
개정 2017. 8. 23.
개정 2018. 8. 17.
개정 2020. 9. 1.
개정 2022. 4. 7.
개정 2022. 5. 4.
개정 2022. 6.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3.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제3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는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를 정하여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과 관련된 실무는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발간 주무부서가 담당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대체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편집위원의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되거나, 편집위원이 논문의 저자·저자의 소속기관·심사위원과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논문의 작성·심사 및 발간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의 구분) ①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논문: 논문의 저자가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해당호의 특집 주제에 응모한다고 명시한 논문

나. 연구논문: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해당호의 특집 주제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의 일반에 관한 논문 및 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등

다. 특별논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타 학술대회 및 위원회 주관 학술행사 등에서 발표된 주제논문 중 저자가 게재를 희망하고 편집위원회가 게재의 필요성을 인정한 논문

- ② 기획논문에 응모하는 저자는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연구제안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청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제안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기획논문의 경우, 주제 적합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논문의 주제를 미리 정하여 청탁할 수 있다.
- ④ (삭제)
- ⑤ 연구논문 및 특별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투고신청서(별지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투고 기준) ① 논문의 투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 2.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격 확인을 위해 투고하는 저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려한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에 있는 논문
 - 2. 기획논문과 연구논문에 이중 공모한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논문
 - 3. 학문적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논문
 - 4. 동일 저자에 의해 이미 다른 형태로 타 출판물에 발표된 논문.
단, 논문의 저자는 선행 출판물과 투고 논문의 상이성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으며, 논문의 상이성 여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④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의 이름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회가 관리하여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논문의 주제가 학자가 평가하기 힘든 실무적인 분야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실무가 중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투고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⑤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은 심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교체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특정 심사위원에게 심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투고자에게 중복된 심사위원이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⑦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9조(심사절차)** ①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해당호에 논문을 투고한 사람은 해당호에 투고된 다른 논문의 심사를 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예규 제7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심사평가)** 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5단계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
1. 현행 게재(A): 85점 이상
 2. 부분 수정 후 게재(B): 75점 이상 85점 미만
 3. 대폭 수정 후 당호 재심사(C): 65점 이상 75점 미만

- 4. 대폭 수정 후 차기호 재심사(D): 55점 이상 65점 미만
 - 5. 게재 불가(E): 55점 미만
- ②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심사결과와 통보 및 이의제기) ① 위원회는 논문의 저자에게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3)를 첨부한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②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자는 의견 또는 반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맡길 수 있다.

제12조(논문의 수정) ①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 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호 및 제4호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기호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논문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논문수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별지에 기록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별로 ‘수정’ 또는 ‘수정불가’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수정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자체 심사를 하거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정된 기획논문이 차기호에 제출된 경우, 해당 기획

논문이 차기호 기획주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연구논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제13조(게재 논문의 확정) ① 게재 논문은 발간 기한에 맞춰 심사 및 수정절차를 완료한 논문 중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② 원고료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게재를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지급하며,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게재 확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의결: 2015년 4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6년 10월 10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2월 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8월 2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의결: 2018년 8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0년 8월 12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4월 7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5월 4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6월 21일)

[별지 1]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연구제안서

접 수 번 호		*위원회 기재
제안대상 주제		
성 명	국 문	
	영 문	
소 속 및 직 위		최종학위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자 택	(우편번호:)
연락처	근 무 처	
	휴대전화	
	전자메일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O권 제O호
 기획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연구를 제안합니다.

제안일자 년 월 일

제 안 자 _____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중

기획논문 연구제안서

1. 논문제목

가. 국문:

나. 영문:

2. 연구개요

3. 연구방법론

4. 연구내용

5. 관련 연구실적 목록

※ 응모 주제와 관련된 응모자의 연구실적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별지 3]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심사 결과 통지서

투 고 자		투고일	
논문제목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세부 심사의견은 별첨 '심사위원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3. 이의제기 방법

〈별첨〉

[심사위원 의견서]

심사평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②	
심사위원 ③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5. 4. 17.
개정 2017. 2. 3.
개정 2018. 8. 17.
개정 2019. 11. 29.
개정 2021. 12. 2.
개정 2022. 11.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이하 “학술지 예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공정한 검증과 처리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한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 및 해당 저작물의 심사·게재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 또는 누락하여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별지 1)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연구자는 본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별지 2)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해 이해상충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학술지 예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상관없이 학술지 예규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원고작성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조 제2항의 위조, 변조, 표절 행위 및 제3조 제3항의 행위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특히 연구자와의 특수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 저자표시 행위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1인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대상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의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① 위원장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과 관련,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연구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심의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⑧ 제보자 또는 피검증자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회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10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④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학술지 예규 제10조에 따라 지급한 원고료를 전액 환수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와 함께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증인, 참고인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저자 소속과 직위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의결: 2015년 4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2월 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의결: 2018년 8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9년 11월 29일)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1년 12월 2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11월 25일)

[별지 1]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논문제목

본인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심사를 거쳐 게재된 적이 없는 저자 본인의 지적 창작물입합니다.
2. 본 논문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다른 출판물을 표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증합니다.
3. 본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속 및 직함	연 락 처	서 명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중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제정일 2015. 4. 17.

개정일 2016. 3. 25.

개정일 2018. 8. 17.

개정일 2022. 5. 4.

1. 논문 작성 일반규칙

- 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논문의 작성은 워드프로세스 ‘한글’로 작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s://pac.jams.or.kr>)으로 제출한다.
- 나.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80매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논문 편집은 A4 사이즈로 위아래 여백 각 35mm(머리말·꼬리말 0mm), 좌우여백 각 30mm, 글자체는 신명조,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11, 줄 간격은 160%로 한다.
- 라. 본문의 각 문단은 한 자 들여쓰기, 참고문헌은 세 자 내어쓰기를 하고 양쪽 정렬을 한다. 단, 블록 인용, 표와 그림의 제목,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마. 논문은 국문 초록(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위, 국문 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 문헌, 영문 초록 순으로 한다. 부록의 첨부가 필요할 경우 부록의 위치는 참고 문헌과 영문 초록 사이로 한다.
- 바. 국문 초록은 논문 내용을 600~1200자로 요약하여 서술하고, 영문 초록은 300~500단어로 작성한다. ‘핵심어(영문 초록은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5개를 선정하여 초록 한 줄 아래 나열한다.
- 사. 지원받은 기금의 출처, 학위 논문 등과의 관련성, 저자의 이메일,

교신저자 등의 표기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하여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

- 아. 본문의 소제목들은 수준별로 1. 1. 가. (1). (가). 1). 가). ①. ㉠ 순서로 사용한다.

2. 각주의 작성

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APA)의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문헌의 인용: 단순한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작성하지 않고, 본문 내의 인용으로 표기한다.

(1) 본문 중 저자의 인용

- 국내문헌: 성과이름(출판연도)
- 동양문헌: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서양문헌: 성(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예 김수철(2014)은 ...라고 지적했다.

나이트 세이추(内藤正中, 2013)는 ...을 주장하였다.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라고 정의했다.

(2) 저자명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

- 국내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출판연도)
- 동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서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 예 …을 지적한다(김수철, 2014).
- …을 주장하였다(内藤正中, 2013).
-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2012).

(3) 재인용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우선 표기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표기

- ☐ 예 김수철(2014: 박희수, 2012 재인용)은 … 라고 지적했다.
-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 이희승, 2012 재인용).

(4) 직접 인용

- 단문의 인용: 인용문은 따옴표(“ ”)로 표시하고, 인용문 끝에 쪽수를 괄호로 쓴다. 번역서는 번역서 쪽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 ☐ 예 김수철(2014)은 “미디어 플랫폼에 따른 콘텐츠의 변형이 중요하다”(12쪽)고 주장했다.
-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미디어는 … ”(132쪽)라고 주장했다.

- 장문의 인용: 별도의 블록을 만들어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블록 전체를 내어쓰기 한다. 블록의 끝에 저자명, 출판연도, 쪽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 ☐ 예 분석대상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간지와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각각 75.0%, 66.7%로 높게 나타났고, 일간신문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 순으로 나타났다(한수도, 2014, 123쪽).

(5) 여러 저자의 단일 연구 인용

○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본문 중 저자의 인용: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기재
- 저자명이 본문 중 나오지 않는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은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서양 저자명은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김수철과 박희수(2014)는 …라고 지적했다.

맥루언과 폴리처(McLuhan & Pulitzer, 1911)는 …라고 주장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박희수, 2014).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 Pulitzer, 1995).

○ 세 명 이상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저자가 세 명 이상 여섯 명 미만인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등’(또는 ‘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는 두 번째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의 성과 ‘et a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저자가 여섯 명 이상인 경우 : 처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명 다음에 ‘등’(또는 ‘외’)이나 ‘et al.’을 표기한다.

☐예 김수철, 박희수, 그리고 최수연(2014)은 …라고 지적했다. 김수철 등은 후속 연구에서 … 주목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박희수·최수연, 2014). …라고 한다(김수철 등, 2014).

맥루언, 폴리처, 그리고 허스트(McLuhan, Pulitzer, & Hearst, 1910)는 …라고 주장했다. 맥루언 등은 … 한다고 한다.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Pulitzer, & Hearst, 1910). 또한 …도 지적되었다(McLuhan et al., 1910).

(6) 두 편 이상 연구의 인용

○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인용을 표기할 경우, 국내문헌(저자명

의 가나다 순), 동양문헌(국가명의 가나다 순), 서양문헌(저자명의 알파벳 순) 순으로 배열하고, 각 연구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 동일 저자의 연구를 두 편 이상 인용할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배열하되, 저자명은 한 번만 표기한다. 출판연도가 동일할 경우는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관련 연구들(김수철, 2010; 박희수, 2013; 内藤正中, 2010; Hearst, 1910; Pulitzer, 1911)은 이러한 결과를 ...
최근 연구들(김수철·박희수, 2012, 2013)은 ...
이러한 연구(김수철, 2011a, 2011b)는 ...

3. 참고문헌의 작성

가. 일반규정

- (1) 참고문헌은 본문 다음 ‘참고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기재한다.
- (2) 참고문헌은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순으로 열거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의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3) 제1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참고문헌에 함께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를 앞에 배열한다.
- (4) 동일 저자의 문헌은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에 출판된 문헌이 두 편 이상일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 (5)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저자의 완전한 성명을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Surname)을 적고, 이름(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생략 표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

자는 가운데점(·)으로 구분한다. 저자가 다수인 서양문헌의 경우는
 쉼표(,)로 구분하되, 마지막 저자는 ‘&’로 구분한다.

나. 문헌의 종류별 표기

(1) 단행본

저자명 (출판연도). 단행본명.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저작물 제목은 꺾쇠(< >) 안에 표기하고, 서양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
 체로 하되,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편집서
 일 경우, 국내 편집서는 저자명 뒤에 ‘(편)’, 서양 편집서는 ‘(Ed.)’ 또
 는 ‘(Eds.)’를 표기한다. 판수(edition)는 제목 뒤에 (제2판) 또는 (2th
 ed.) 등으로 표기한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미국은 주 포함)와 출판
 사명을 기재하고, 둘 사이는 쌍점(:)으로 구분한다. 보고서는 보고서의
 일련번호를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

- ☐ 김수철 (2015). <디지털시대>. 서울: 책세상.
 박희수 (편) (2013). <세계의 언론법>. 부산: 책고을.
 Hearst, W. R., Pulitzer, J., & McLuhan, H. M. (Eds.) (1950).
History of privacy: Arising issues of privacy in public spac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최수연 (2013). <대량 조정처리신청 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조사연
 구 2015-00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 호수, 쪽수. 순으로 하되,
 국내 학술지명은 꺾쇠 안에 표기하고, 쪽이 여러 면에 걸칠 경우 붙임
 (-)으로 표기한다. 서양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주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권수
 뒤 괄호 안에 기재하되, 이전 호의 쪽수가 다음호로 이어지는 연속번

호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수를 적지 않는다.

예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Hearst, W. R. (1950).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Journal of Human Rights*, 18(3), 123-142.

(3) 편저 속의 한 장(Chapter)이나 논문

편집된 책에 포함된 한 장이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인용한 장의 저자명 (출판연도).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은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 (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쓰고 성(Surname)을 기재한다. 마지막 편집자 성 뒤에 '(Ed.)' 또는 '(Eds.)'를 쓴다. 이때 국내 편집서명은 꺾쇠 안에 표기하고 서양 편집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김수철 (2013). 소송의 사회적 비용과 언론중재제도. 박희수·최수연 (편). <미디어법제의 미래> (123-142쪽). 서울: 새미디어.

Hearst, W. R. (1950).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cy. In J. Pulitzer, & H. M. McLuhan (Eds.), *Privacy and Big Data: Surveillance or Public good?* (pp. 703-732). Trenton, NJ: Ablex.

(4) 번역서 또는 편역서

원저자 (원저 출판연도). 원저 제목(출판본). 역자 (번역서 출판연도). 번역서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하고, 역자명 뒤에 '(역)' 또는 '(편역)'을 표기한다.

예 McLuhan, H. M. (2013). *Remedies for damage to reputation* (3rd ed.). 김수철 (역) (2014). <명예의 훼손과 구제>. 서울: 서울출판사.

(5)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발표자명 (발표연도, 월).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발표 도시명(:발표 장

소 표기 가능).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명은 꺾쇠 안에 기재한다.

예 최수연 (2014, 8월).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대전: 언론연구소.

(6) 학위논문

국내 대학 학위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논문제목>. 학위 수여 대학과 학위명. 순으로 한다. 서양 대학의 경우, 학위명, 수여 대학, 국가명(미국은 도시 및 주)을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논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미출판 논문에 대해서는 학위명 뒤에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Unpublished master's thesis를 표기한다.

예 박희수 (2015). <부정적 보도의 강도가 조정 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McLuhan, H. M. (1995). *A Study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cross-border complaints on med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Y.

(7) 신문, 잡지, 또는 뉴스레터

출판일자가 명확한 경우 저자명 뒤에 출판년, 월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불명확한 경우는 출판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출판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기사는 게재면을 기재하고, 여러 면에 걸쳐 실린 경우는 해당 면 모두를 기입한다.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하고, 특정인의 기고문은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명으로 한다. 익명의 기고자는 기사의 제목 두 세 단어로 작성자를 대신한다.

예 한국신문 (2014, 2, 28). 미디어 콘텐츠 투자 늘었다. 3면, 4면.

최수연 (2013, 3, 4). 신생 미디어 플랫폼, 부작용 대비해야. <한국신문>, 11면.

McLuhan, H. M. (2013, July 5). Interactive storytelling and multimedia. *The New York Times*, pp. B1, B5.

신생 미디어 플랫폼 (2013, 3, 4). <한국신문>, 11면.

다. 온라인 자료 표기

(1) 정기간행물

학술논문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중 하나로 기재한다. 마지막에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주소(URL:)를 제시한다(외국문헌의 경우 Retrieved from으로 표기). 인쇄본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권, 호수 기입 없이 간행물명과 URL만 제시한다.

예)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전자매체본].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URL: <http://www.pressandrightsgo.kr/reference/journal.jsp>

Achankeng, F (2014).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On-line]. *African Journal on Conflict Resolution*, 13(2), 11-38.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2) 비정기간행물

저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표기한다.

예)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n. d.*).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3) 연구보고서 또는 세미나 자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와 같이 문서 제공자와 문서 작성자가 구분되는 경우는 기관명을 먼저 기재하고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쓰고자 할 경우에는 웹 사이트에 문서가 게재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의 이름을 표기한다.

예)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

최수진·김정섭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14-19).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

(4) 기타 전자 매체 자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기재한다. 온라인상에서 읽은 기사는 기사 작성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표기한다.

예) 통계청 (2013). 정기간행물 연도별 증감현황.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O#SubCont

금준경 (2015, 1, 14). 어뷰징 기자들과 대화 “클러스터링? 검색기사 막기 힘들 것”. <미디어 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28>

라. 법률 자료의 표기

(1) 판례

우리 판례는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순으로 기재하고, 미국판례는 사건이름, 판례집 권수, 판례집 이름, 해당 판례의 첫 페이지, 판결 연도 순으로 한다.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판례명(연도)’, 또는 ‘(판례명, 연도)’로 표기하고, 외국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예)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대법원, 2013. 2. 14.)

Brown v. Board of Educ., 347 U.S. 483 (1954).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Lessard v. Schmidt(1972) 또는 (*Lessard v. Schmidt*, 1972)

(2) 법령

우리 법률은 법률명 다음에 법률시행일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미국의 법률명, 권, 출처, § 절 번호, 시행연도 순으로 표기하고,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법률명(시행연도)’로 기재한다. 법률개정안은 개정 법률안명 다음에 대표발의자와 발의일자를 기재한다.

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 4.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재영, 2015. 1. 30.).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4. 표와 그림

가.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목을 붙이고, 표 또는 그림의 상단에 제시한다.

나.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꺾쇠 안에 표기(예시: <표 1> 참조.) 한다.

다. 표, 그림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는 표와 그림의 하단 왼쪽에 출처를 표시한다.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편집위원 강승식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상윤모 ■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보건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미선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소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재 ■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ISSN 2465-9207

2023년 제9권 제1호

2023년 4월 15일 발행

편집·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인쇄 ■ 도서출판 관악사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전화] 02.397.3041~4

[이메일] journal@pac.or.kr

-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본 학술지의 무단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pac.or.kr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